

---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김 현 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⑭-4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

김 현 희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Ⅳ)

- Vietnam -

연구자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Hyun-Hee

2012.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원자재 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보유국들과의 자원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한국은 최근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 및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
- 아시아의 자원부국으로서 주요한 협력국으로 논의되고 있는 베트남
  - 세계 주요 언론이 세계 성장을 견인할 신흥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로서 MAVINS, VIP 등에 베트남이 모두 포함
  - 베트남은 BRICs를 이을 차세대 시장으로서, Post-China의 최대 유망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협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관련법제와 투자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 베트남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베트남은 외환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2년 12월 22일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중점 협력대상 국가로 지정하였음
- 최근에는 한-베트남의 FTA 협상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자원의 협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라는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석유, 대륙붕 개발, 광물 개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최근 광물법(2010), 석유법(2008) 등을 개정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베트남의 광물법과 석유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도모하며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5년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신투자법을 시행
- 베트남의 투자법과 기업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Ⅲ. 기대효과

- 한국과 베트남이 전면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이 상호 보완적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양국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한국-베트남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
  - 나아가 에너지 부문의 대외 진출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외 기업, 현지 기업, 국내 유관 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관련 법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 기대됨

▶ 주제어 : MAVINS, 베트남, 광물법, 석유법, 투자법, 원자재 개발 협력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Need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for resources with resource powers for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or energy
  - Korea has the structural weakness which sensitively reacts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that it recently has actively invested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energy market and increase the energy self-sufficiency.
- Vietnam is considered as the resource power in Asia and important partner.
  - Vietnam is considered as the new region that will lead the international economic growth by major media of the world and is included in MAVINS, VIP, etc.
  -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reasingly prefer investing to Vietnam while considering it as the next generation market following BRICs and the most promising country in the Post-China world.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ustomize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systematically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source related laws and investment laws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Vietnam on raw materials development.

## **II. Major Contents**

- Status of Cooperation with Vietnam for Raw Material Development
  - Vietnam is considered as a major economic partner for Korea for it has great growth potential although it has foreign exchange liquidity issue.
  -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on December 22, 1992, Vietnam and Korea agreed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nto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and Korea selected Vietnam as the major recipient country for substantial support.
  - Recently in the negotiation for Korea-Vietnam FTA, Korea is making efforts to include cooperation f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Vietnamese Laws Related with Raw Material Development
  - Vietnam promoted petroleum developme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and mineral development by inducing foreign investment since they enforced the open economic policy called ‘Doi Moi’ in 1986 and is continuously undergoing a number of changes such as the recent revision of the Minerals Act (2010) and the Petroleum Act (2008).



-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system and details of the Minerals Act and the Petroleum Act of Vietnam.

#### Vietnamese Laws Related with Investment

- Vietnam enforced a new investment law which treat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equally in 2005 in order to develop national economy by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developing and using natural resources efficiently.
-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system and details of the Investment Act and the Corporation Act of Vietnam.

### **III. Expected Effects**

- Support Vietnam and Korea to develop a full partnership to form a complementary ‘Win-Win Relationship’ for both parties
-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ole of Korea to develop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Korea to secure resources stably and create benefits for both countries.
- It is also important to seek a way to tap into the foreign market hand in hand by sharing information and cooperating between compan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that built up experiences and know-hows about overseas energy market, local companies, and related companies inside the country.

□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research material for intensifying the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on th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by precisely analyzing and evaluating related laws of Vietnam.

▶▶ Key Words : *MAVINS, Vietnam, Minerals Act, Petroleum Act, Investment Act, Cooperation for Raw Materials Developmen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 2 장 베트남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17
제 1 절 베트남 개황 .....	17
I. 베트남의 역사 .....	17
II.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	18
III. 베트남의 정치와 법제 .....	21
제 2 절 베트남의 자원현황 및 자원개발정책 .....	23
I. 개 요 .....	23
II. 자원 현황 .....	26
제 3 절 베트남의 경제 및 투자 현황 .....	30
I. 베트남의 경제상황 .....	30
II. 베트남의 투자현황 .....	36
제 4 절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42

제 3 장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	47
제 1 절 개 관 .....	47
제 2 절 광물법제 .....	50
I. 체 계 .....	50
II. 주요 내용 .....	57
제 3 절 석유 및 가스법제 .....	67
I. 체 계 .....	67
II. 주요 내용 .....	70
제 4 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	77
제 1 절 개 관 .....	77
제 2 절 투자법제 .....	84
I. 체 계 .....	84
II. 주요 내용 .....	86
제 3 절 기업법 .....	108
I. 체 계 .....	108
II. 주요 내용 .....	109
제 5 장 결 론 .....	129
참 고 문 헌 .....	13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 경제에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반산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부 비철금속을 제외한 에너지 및 금속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광물자원의 공급기반이 날로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확보 경쟁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각 국은 이러한 추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 및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sup>1)</sup>

세계적으로 광물자원시장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원 보유국가의 자원개발 규제 강화와 수요국가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광물자원 분야의 개발강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력광물자원 확보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들과의 자원협력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자원부국인 베트남이 주요한 협력국으로 논의되고 있다.<sup>2)</sup>

베트남은 최근 수년간 8%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BRICs를 이을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

1) 김홍기, “한국의 대 동남아 주요국과의 에너지 외교 : 에너지 안보차원의 현황과 전망”, 「동서연구」, 제21권 제1호, 2009, 257면 및 176면.

2) 이지윤 외, “베트남 광물자원현황”, 「광물과 산업」, Vol. 22, 2009, 31면.

자 정책 변경에 기인한 투자환경 악화 및 중국 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가 가시화되면서 Post-China의 최대 유망국가로서 투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sup>3)</sup>

특히 2012년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2월 「韓-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진전도가 아-태 시장을 선점하는 분수령이 될 것을 전망하여 베트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험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sup>4)</sup>

최근 6% 이상의 높은 성장세와, 중국과 인도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차세대 아세안(ASEAN)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요 언론이 세계성장을 견인할 신흥지역으로 지정한 MAVINS(비즈니스 인사이트), VIP(닛케이 비즈니스) 등에 베트남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TPP, ASEAN+3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메콩경제권(GMS) 개발사업 등으로 베트남의 인프라 문제가 개선될 경우 베트남의 성장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자원 관련 법제와 투자 관련 법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베트남과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주요 협력국 대상으로서의 베트남의 자원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전반의 상황과, 그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그에 관

3)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Post-CHINA, 베트남 투자 유의사항 10계명」, Global Investment Report, 2008, 1면.

4) 기획재정부, “韓·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 대외경제국 보도자료, 2012. 2. 14, 1면.

한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투자법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다만, 여기서 원자재라 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교통상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자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광물”, “석유”, “가스”로 한정하고,<sup>5)</sup> 그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논의로서 베트남의 자원현황과 자원개발정책, 경제 및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우리나라와의 원자재 관련 개발협력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제2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로서 광물법, 석유 및 가스법에 관하여 그 법적 체계와 특징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분석한다(제3장). 한편,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로서 투자법과 그 주요 관련법으로서 기업법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본다(제4장).

이러한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베트남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그에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5) 외교통상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자원개발의 이해」, 에너지 협력외교 자료집, 2008. 참조.

## 제 2 장 베트남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제 1 절 베트남 개황

#### I.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은 유리한 자연조건에 힘입어 일찍부터 사람들의 유입과 활동이 활발했다. 베트남의 문명이 일찍 시작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

베트남은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찍부터 여러 세력의 침탈대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끝없는 투쟁의 역사로 점철됐으며, 그 결과 역사의 절반은 투쟁의 시간이 되었다. 그 중 국가를 지키기 위한 큰 전쟁은 13차례 이상이나 되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은 수백차례의 대소 내란과 독립을 위한 수십 차례의 대규모 민족 해방 전쟁을 치러야 했다.

베트남의 대외전쟁은 먼저 남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던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秦)대말 광서·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독립된 왕조를 세웠던 남월(南越)의 침략에 B.C. 179년 패배함으로써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A.D. 938년까지의 중국 식민지기간은 베트남의 대부분 고대사에 해당된다.

독립봉건왕조 이후에도 중국의 간헐적인 침략은 계속되었고, 이중 명의 침략으로 베트남은 1406년부터 1428년까지 또 다시 식민지가 되었다. 13세기에는 중앙아시아를 유린했던 몽골의 세 차례 침략을 받았다. 북쪽으로부터의 침략 외에도 같은 시기 베트남은 남쪽에 위치한 점성, 캄보디아, 태국 등의 침략도 받았다. 이 중 국경을 접했던 점성의 잦은 침략으로 베트남은 수차례 수도가 유린되기도 했다.



지리상의 발견이후 1858년 프랑스의 침략은 베트남 투쟁의 대상을 중국 등 베트남 주변부 국가들에서 서구로 바꿔놓았다. 이때부터 1945년 독립을 되찾기까지 베트남은 프랑스와 지난한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독립이 된 후에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재식민지화 야욕에 맞서 베트남은 1954년까지 또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도미노 이론에 입각한 미국의 진출로 베트남은 장기 항전에 들어갔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면 미국과의 전쟁은 냉전시대의 산물이었다.

베트남의 대외전쟁은 1975년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복잡한 대내외적 관계 속에서 베트남은 1978년 캄보디아를 침략하였고 그에 대한 응징으로 1979년 침략한 중국과 전쟁을 치렀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을 치룬 베트남은 국력이 약하여 장기간 주권을 상실하는 불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나는 투쟁을 통해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나아가 베트남은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점성,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이 중 점성과 캄보디아로의 침략은 오늘날 베트남의 영토를 결정짓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베트남 역사는 전반적으로 이중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II.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좋은 자연조건 때문에 베트남은 일찍부터 도작농업이 시작·발전했다. 도작농업은 많은 노동력과 그 노동력의 정착을 요구했으니 그 결과 자연스런 집단거주, 즉 촌락을 낳았다. 촌락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 받고 자치를 허용 받은 대신에 국가에 조세, 부역, 군역을 부담했다. 촌락의 운영은 자신들이 제정한 향약에 근거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6) 송정남,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 전망 -」,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국법의 존락의 규례에 진다(Phép vua thua lệ làng)”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하였다.

왕이 지급하는 토지는 촌락의 정호가 지급받는 토지 외에도 공신들이 지급받는 식읍 등이 있었다. 그 사용은 수전자의 1대에 국한되었지만 국법을 어겼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손에게 계승되었다. 식읍을 경작하는 식호는 조세, 즉 지세만을 식읍주에게 납부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자 혹은 주종 관계가 아니었다. 바로 이점이 서구의 봉건사회와 다른 점이다.

한편, 도작농업은 일찍부터 베트남을 농업사회, 농촌사회, 농민사회로 결정지었다. 또한 반제·반봉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했기 베트남은 지금도 농업·농촌·농민사회적 특징이 유지되고 있다.

반 랑(文郎)국과 어우 락(甌駱)국 시대는 베트남의 초기 봉건사회였는데, 중국이 어우 락국을 멸망시키고 일천년(B.C.179-A.D.937) 이상을 지배했던 것은 여러 면에서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적인 것에 중국적인 것의 결합 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중국화를 그 결과로 들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발전되고 체계화된 아시아적 생산방식과 아시아적 봉건사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은 15세기 이후 사전의 비율이 공전의 비율을 초월하고, 사전 형태의 식읍이 확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아시아적 생산방식이 유지되었다. 15세기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서구가 베트남에 들어오고 이어 19세기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베트남에는 전혀 새로운 시장경제의 생산방식이 유입되었다. 모든 베트남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바뀐 것은 아니고,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아시아적 봉건주의사회와 서구적 자본주의사회가 공존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베트남의 아시아적 생산방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견고하고 중압적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이 생기고 이의 반제·반봉혁명의 성공 지역, 즉 해방구를 중심으로 베트남 사회는 크게 변화를 맞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생산방식은 사라졌다. 토지는 왕의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분배받은 경작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토지의 개인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무산계급의 사회, 즉 노동자, 농민, 군인의 사회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소유 때문에 투쟁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노동에만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사회여서 전통에 자본주의가 가미된 특징을 띠었지만 1975년 북부에 의하여 통일되면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베트남 전역은 공유의 개념만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공산당의 계획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봉건적인 것들은 半封이란 이름하에 퇴출되어 중국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이념인 공개념은 노동력과 창조력을 저하시켰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찾아 조국을 탈출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boat people: 해상난민)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한국에도 도착하였다.

1986년 12월의 전당대회는 베트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결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통적 1차 산업사회에서 제2차, 제3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방 이후 베트남의 토지개념을 보면,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민은 사용권만을 갖는 제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만을 제외하면 베트남의 생산방식은 우리를 포함한 어느 자본주의 국가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이 오랫동안 아시아적 생산방식을 유지했고, 잠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접목한 이래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혼용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중국의 문화권에 있었던 관계

로 베트남 사회의 특징은 우리의 역사, 문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sup>7)</sup>

### Ⅲ. 베트남의 정치와 법제

베트남은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을 실패하고, 캄보디아 침공(1978) 및 중·베트남 전쟁(1979)에 따른 과도한 전비 부담과 서방 국가의 원조 중지 등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1980-1982)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이에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 머이(Đổi mới)<sup>8)</sup> 정책을 채택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확대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1989년 캄보디아에 주둔하던 베트남군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변화 및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적극적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서방 관계가 급진전 되었으며 중국과의 국교도 정상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관리 하의 대부분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경제자유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제도 및 정부구조의 혁신과 공직자의 자질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의 정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민족 조국 전선의 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송정남, 앞의 글, 20-23면.

8) 베트남어로 ‘Doi’는 변화, ‘Moi’는 새로움을 뜻하며 ‘Doi Moi’는 ‘새롭게 변한다’는 의미에서 쇄신(renov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장상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그러나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sup>9)</sup>

한편, 베트남의 법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기원전 179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법제 또한 중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적용되었다. 초기 중국 한나라가 지배할 때까지는 주로 베트남인의 저항을 진압할 목적으로 각종의 형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근거는 한나라의 법률이었다. 특히 행정,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규정은 베트남인을 중국의 법제에 동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베트남 독립 왕조하의 법제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과 중앙집권 봉건체제 및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는 프랑스 식민 당국이 베트남에서 정권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톤킨(Tonkin),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 등의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과 위 세 지역에서 상이하게 적용하는 법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9월 호치민을 주석으로 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헌법을 제정하였고, 베트남 전쟁 후 1980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을 공포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민의 기본 권리 및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과 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1992년 헌법 개정과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법제에 이르고 있다.<sup>10)</sup>

9)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혁」, 2009. 5, 35-36면 참조.

10)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동남아연구」, 제19권 제1호, 동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였는데, 1987년 12월 외국투자법의 제정은 국가가 외국 개인 및 조직이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는 베트남에 대한 자본 및 기술투자를 장려하여 외국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왔으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공동투자법을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새로운 통일기업법과 함께 통과시켰다.<sup>11)</sup>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 제 2 절 베트남의 자원현황 및 자원개발정책

### I. 개 요

베트남은 헌법 제2장 경제제도에서 “베트남은 …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 정책을 실현한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 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라고 하여 사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제15조). 그 일환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의 목표로서 모든 경제구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경제조직, 개인은 법으로 금하는 분야 이외에 모든 생산, 경영 활동을 인정한다(제16조). 특히,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남아연구소, 2009. 5, 5-22면 참조.

11) 전병서,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1, 3-4면.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또한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이점을 적극 도입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25조).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①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광물은 정부주도로 개발, ② 기타 광업부문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을 통해 개발, ③ 부족한 정부 재정으로 광업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투자 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탱하는 원유 및 석탄 생산은 자원에 대한 제약도 있어 언젠가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 가스, 석탄,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조사·탐사·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포괄적 지침으로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2007년의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이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수력발전)의 매장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인접국가와 함께 석탄 및 원유, 기타 에너지에 관한 조사·탐사·개발에 대한 협력관계를 확대한다.
- 전력, 석탄, 석유가스 등 모든 에너지 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석탄과 석유제품은 2015년까지, 전력소매단계의 경우는 2022년까지 시장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12) 조상수, “베트남의 석유·석탄 등 자원개발 현황과 전망”, The Gas Safety Journal(가스안전저널), 2008. 11, 75-77면.

또한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은 에너지 공급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면적으로 홍보함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전력, 석탄, 석유 등에 대한 체제정비 목표도 세우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석탄 부문에서는 지하 300m의 탄광개발, 께 응인(Quang Ninh)탄광의 지하 400~1,100m 개발, 지방의 석탄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탄광에 대한 투자, 홍하 델타 탄광개발을 위한 FS(사업화조사) 실시자금의 조달 등을 통해 석탄수요를 충족시키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석탄개발의 촉진과 합리적인 석탄수출의 실현들을 도모한다.
- 석유가스 부문은 하류부문의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가스부문은 요금체계 및 기술 분야의 사업인허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수송 및 배송에 대한 라이선스 교부, 가스가격, 가스수송요금, 배송비용, 기술기준 등을 정비한다. 또한, 석유개발 업무를 촉진하고 동시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유탐광 개발계약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적인 검토, 재무조건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한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이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수한 기술을 투입하여 가스전 채굴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석유정제·석유화학산업 및 그 제품 유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 기업과의 협작을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베트남 자원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을 개발하고 수출·입 및 유통을 통제하면서도<sup>13)</sup> 재정 및 기술 환경 지원을 통해 기관, 개인들의 광업활동을 허가 및 지원하며, 자본, 소유권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부

13) 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일반적으로 'Petro vietnam'으로 불린다, 원유 및 가스 개발), Vinacomin(석탄 개발), Electricity of Vietnam(전력) 등이 핵심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광물자원 개발에 인적·재정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II. 자원 현황

### 1. 광 물

베트남은 에너지·광물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된 편이지만, 사실 세계의 자원 대국과 비교해 볼 때 자원량이 막대한 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베트남에는 총 60여 개의 광물자원과 5000여 개의 광산이 존재하는데, 베트남 석유 생산량은 아시아의 6위에 해당하며, 석탄(대부분 무연탄), 석회석이 풍부한 편이고, 보크사이트, 철광, 주석, 크롬, 동, 아연, 흑연, 운모, 티탄철석, 니켈, 망간, 티타늄, 금, 인회석 등이 존재하나 부존량은 소량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광물자원 산업은 전체 GDP비중이 9.79%, 연간수출액의 17.5%로서 전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평가된다. 다만, 풍부한 광물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은 상업성 부족과 개발여력 부족으로 초기단계 미개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자원개발 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기술 및 자금 부족과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도로, 운송수단, 설비 등 기본적 인프라 부족이 주요인이며, 광물 생산 시 구식장비와 낙후기술로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14)</sup>

### 2. 석유·가스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는 1차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각종 자원고갈에

14) 박동욱, 베트남, 광물자원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H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kBsaGhpR7ggAN5HZOQ!!/?id=2109088&workdist=read](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H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kBsaGhpR7ggAN5HZOQ!!/?id=2109088&workdist=read)

대비한 선진국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89대 석유수입국으로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베트남의 자원개발 잠재력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석유소비량은 경제규모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2005년 말 현재 세계석유의 전체 확인가채 매장량은 약 1조 3000억 배럴이며, 가채 년수는 41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2007년 기준으로 14억 배럴과 6조 8000억 입방피트로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해역은 아직까지 탐사가 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탐사활동으로 매장량은 향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량이 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베트남의 유전들은 실제 매장량은 각각 20억 배럴과 10조 입방피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석유·가스 산업은 주요 수출산업인 동시에 기술, 서비스 및 장치 등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산업이다. 1990년 이후 베트남은 인근 해안 유전에 대한 활발한 탐사활동을 전개했음은 물론 에너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예컨대, 2009년 베트남은 2430만 톤의 원유를 생산했는데, 이는 약 142억 달러 규모이며, 베트남 GDP의 약 16%에 해당하고, 약 78억20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베트남 총 수출의 약 14%를 차지해 점유에 이어 베트남 제2의 수출품목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sup>15)</sup>

사실 베트남은 2009년까지 정유시설 없이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아시아 지역에서 6번째의 석유 생산국임도 불구하고 그동

15) 권경덕, 베트남의 자원개발 : 석유·가스,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w1?1=1&workdist=read&id=2123976](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w1?1=1&workdist=read&id=2123976)

안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제시설이 없어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증가는 석유제품 수입증가로 상쇄되어 왔다. 사실 베트남 내의 정유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정부, 즉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련한 베트남 국영기업인 페트로 베트남(Petro vietnam: Vietnam Oil & Gas Corporation, 이하 'PVN')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지배하고 있어 석유가격 통제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sup>16)17)</sup>

2010년 베트남은 원유 1,501만 톤, 가스 94억 m<sup>3</sup>을 비롯하여 오일 상당량 총 2,441만 톤을 생산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원유 720만 톤, 가스 47억 m<sup>3</sup>을 비롯하여 총 1,19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렇게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만에 석유탐사 및 생산 계약 총 12건이 체결되었다.<sup>18)</sup>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86개 석유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가운데 61건은 현재 시행 중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6개월에 걸쳐 2차원으로 총 35,093km, 3차원으로는 8,402km<sup>2</sup>의 지진 데이터가 확보된 바, 총 36건의 탐사와 유전이 시추되었다. 여기에는 유전과 가스전 5곳이 새로 생산에 들어갔으며, 석유 및 가스전 9곳이 새로 추가 확인되었다.<sup>19)</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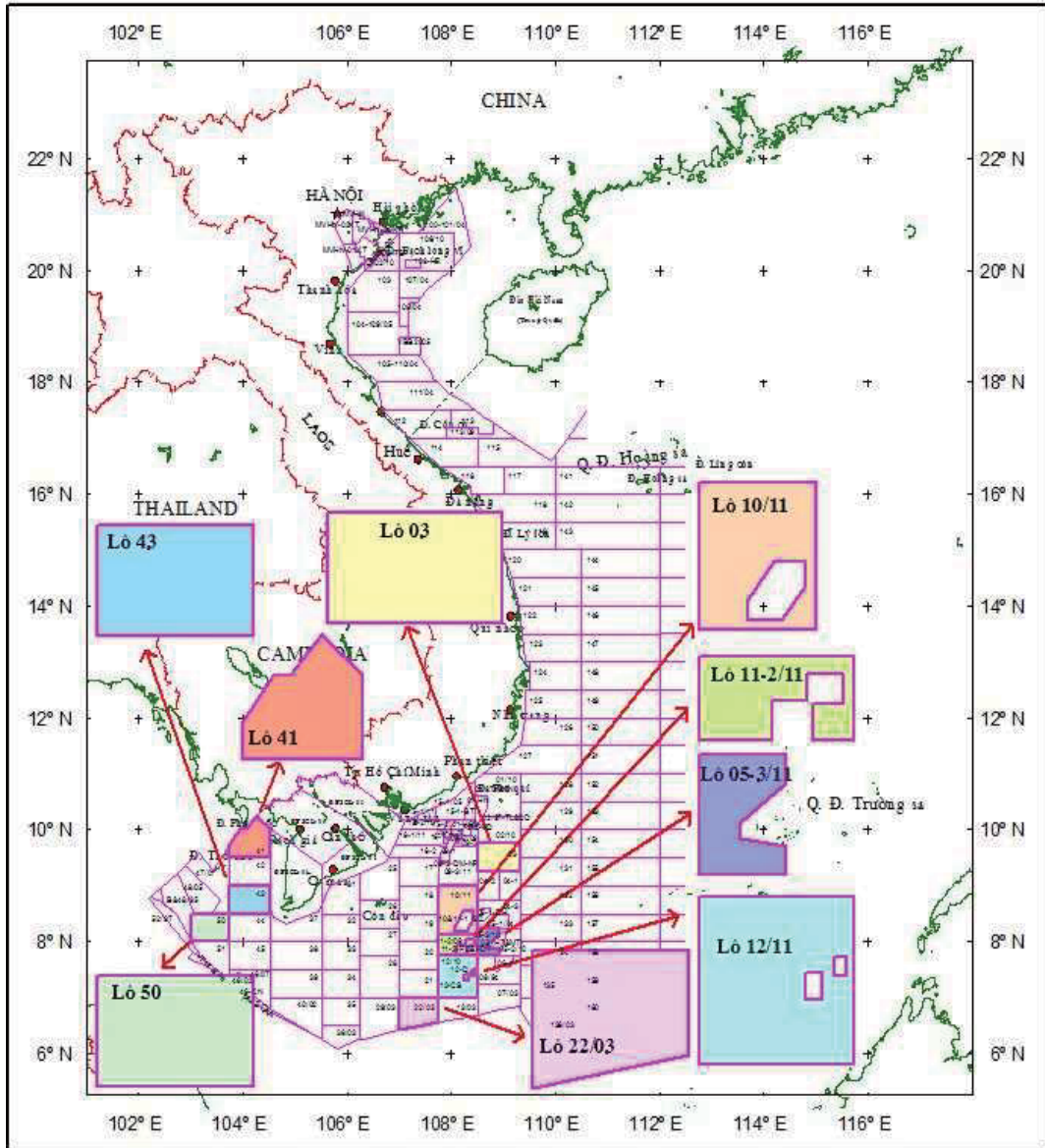
16)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는 Petro Vietnam의 단독 또는 생산물 분배계약(PSC) 또는 Petro Vietnam의 지분 참여형태의 합작투자를 통해 생산된다. 현재 베트남 최대의 석유 생산회사는 Vietsovpetro(VSP)로서 Petro Vietnam과 러시아 회사인 Zarubezhneft가 공동 설립한 합자회사이다.

17) PVN의 주요 업무는 (i) 베트남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25개 합작회사 설립 운영, (ii) 베트남 내 26개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을 관리 감독하고 자본을 제공, (iii) 외국과 계약한 7개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을 위한 관리 감독 등이다. KOTRA, 「자원개발 진출가이드 - 베트남」, 2008, 21면.

18) Bach Ho- Rong, Ruby, Rang Dong, Lan Tay- Lan Do, Su Tu Den, PM3- Cai Nuoc, Dai Hung, Ca Ngu Vang, Su Tu Vang, Topaz, Pearl.

19) CCOP Vietnam, Member Country Report of VIETNAM, 48th CCOP Annual Session, 13-17 November 2011, pp. 5-6.

<그림 1 - 베트남의 석유 광구 현황>



자료 : PetroVietnam. ([http://english.pvn.vn/?portal=news&page=detail& category\\_id=116&id=3644](http://english.pvn.vn/?portal=news&page=detail& category_id=116&id=3644))

베트남은 과거 WTO 가입 시 석유와 가스 산업을 외국인에 개방하기로 양허한 바 있으며, 이후 대규모 외자 유입 및 기술이 유입돼 산업발달에 기여하였다. 베트남 정부도 지난 몇 년간 이 부분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석유법의 개정과 PVN의 경영개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으며, 베트남에 투자한 석유 관련 외자기업의 성공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2009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석유법과 Petroleum Bidding 절차를 보완하는 규칙을 발표하는 등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개방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2015~25년의 베트남 석유가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이 기간 중 2030억 달러를 투자해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급률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PVN 등의 원유 탐사 기술수준은 기타 산유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탐사기간의 장기화, 경제성 상실 등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선진기술 도입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베트남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외자기업의 참여로 베트남에 발생하는 수익규모는 총 부가가치의 약 65%에 불과하며, 특히 매년 1200만 톤, 70억 달러 규모의 정유를 수입하는데, 이는 곧 베트남이 정유시설을 더욱 확충해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수입대체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석유 탐사 시 무분별한 개발 및 탐사를 지양하고, 경제성 높은 새로운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유시설은 물론, 저유, 송유 및 국내 유통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후방산업으로 베트남의 석유화학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제 3 절 베트남의 경제 및 투자 현황

#### I. 베트남의 경제상황

베트남은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아시아의 저개발국이며 전형적인 신흥국에 속한다. 베트남의 GDP는 2010년 1,035억 달러로 한국의 1/10,

태국의 1/3 수준이지만 인구는 한국의 2배 가까운 정도이다. 1인당 소득도 아직 1,170달러 수준으로 태국의 약 1/5 수준이고 중국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2010)>

	인구 (만 명)	GDP (억 달러)	1인당 GDP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베트남	8,650	1,035	1,173	722	848
태국	6,730	3,189	4,992	1,932	1,793
한국	4,890	10,149	20,765	4,664	4,252
중국	13,397	59,304	4,421	15,779	13,948

자료 : 박번순, “베트남 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4, 35면에서 재인용.

베트남은 짧은 시간 내에 농업 경제에서 광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나, 농업은 여전히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생산구조에서 광공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41.1%에 이를 정도가 되고 1차 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고용구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약 절반의 경제활동 인구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도이모이(Đổi mới) 정책의 효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9%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을 받아 외국투자가 급감하고 수출 측면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1999년도 성장률은 4.8%로 낮아졌다.

2000년 이후 베트남은 10개년 국가전략(2001~2010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경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지표로서 10년 동안 GDP를 배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2010년 GDP를 2000년일 때의 2배로, 앞으로는 연 7% 성장을 지향함), 국내 저축률은 30%, 수출은 GDP의 2배 성장률, 경제구조는 공업섹터의 신장(GDP 점유율: 농업 16~17%, 공업 40~41%, 서비스 42~43%)을 목표로 하였다. 나아가 2006년 4월에 채택된 제8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는 경제발전이나 빈곤 타파 외에 문화와 환경보호 등 사회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치 목표로는 2010년의 GDP를 2000년 대비 2.1배인 850~890억 달러로 하고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연 평균)을 7.5%~8.0%로 하는데, 국내외 환경이 양호하다면 그 이상의 성장을 지향한다. 1인당 GDP는 2010년까지 1,050~1,100달러를 목표로 삼는다(참고 : 2005년 1인당 GDP 636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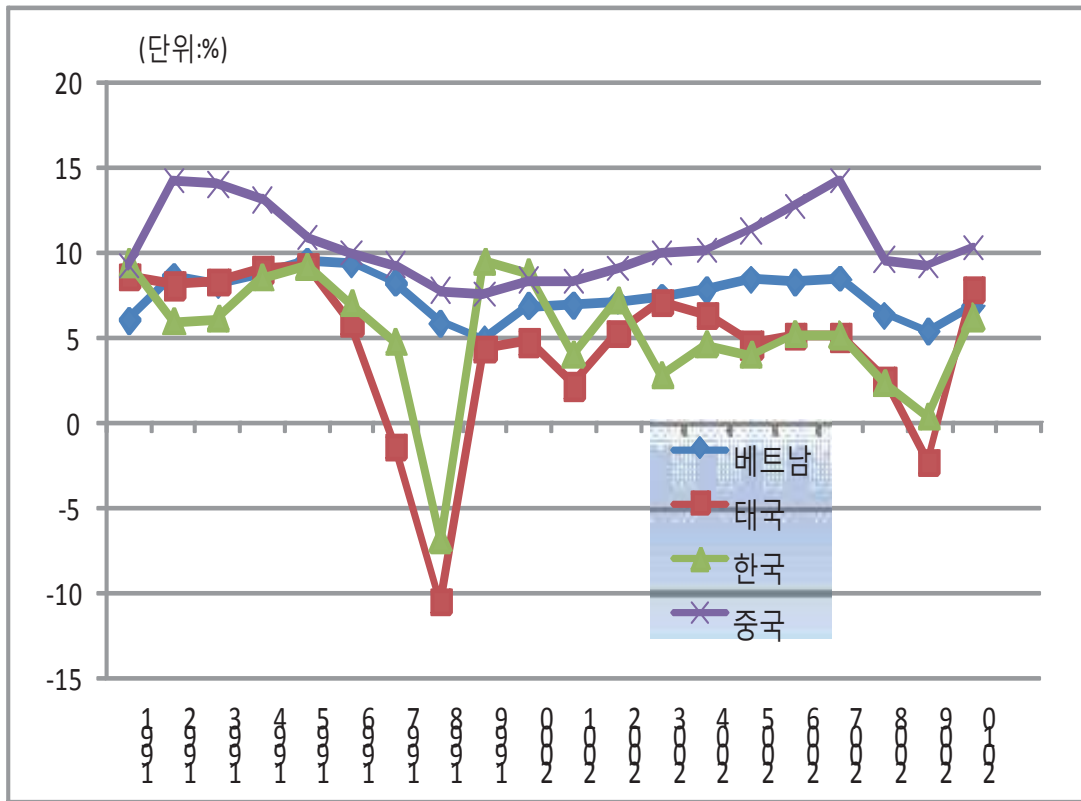
2011년 1월에 개최된 제11회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이 새로운 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당 정치국원 14명으로 구성되는 신 집행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그와 동시에 새로 제9차 5개년 계획(2011~15년)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평균 경제성장률을 7~8%, 수출규모를 평균 12% 증가, 재정적자를 2010년 GDP 대비 6.2%에서 4~5%로 축소, 1인당 GDP를 2015년까지 2,100달러로 할 것 등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신 10개년 국가전략(2011~2020년)에서는 시장경제 제도의 정비, 평등한 경제 환경의 창출, 인재 육성, 인프라 정비 등 2020년까지 공업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인당 GDP를 2010년의 1,200달러에서 약 2.5배인 3,000~3,200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하였다.<sup>20)</sup>

---

20) [http://mric.jogmec.go.jp/public/report/2011-04/vietnam\\_11.pdf](http://mric.jogmec.go.jp/public/report/2011-04/vietnam_11.pdf)

<그림 2 -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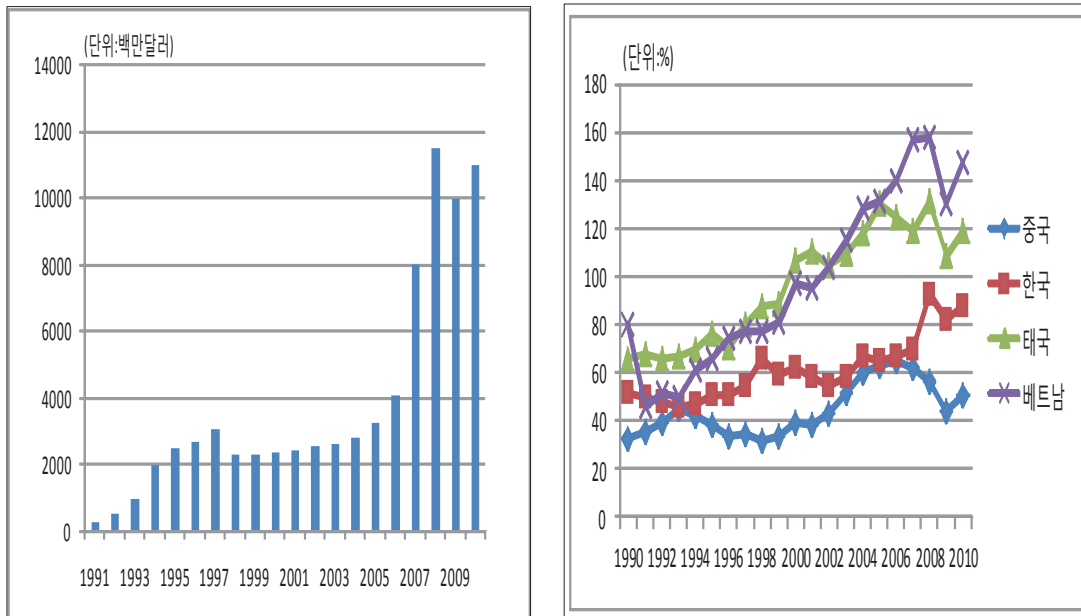
자료 : 박변순, 앞의 글, 36면에서 재인용.

베트남 경제의 특성으로는 대외지향적 성장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국영부문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21)</sup> 대외지향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규모(집행 기준)는 1995년 2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약간 정체했으나, 2007년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08~2010년에는 투자집행액이 연 평균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21) 박변순, “베트남 경제의 현황과 전망”, 「신흥시장국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 전망 -」,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39-47면.



<그림 3 -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무역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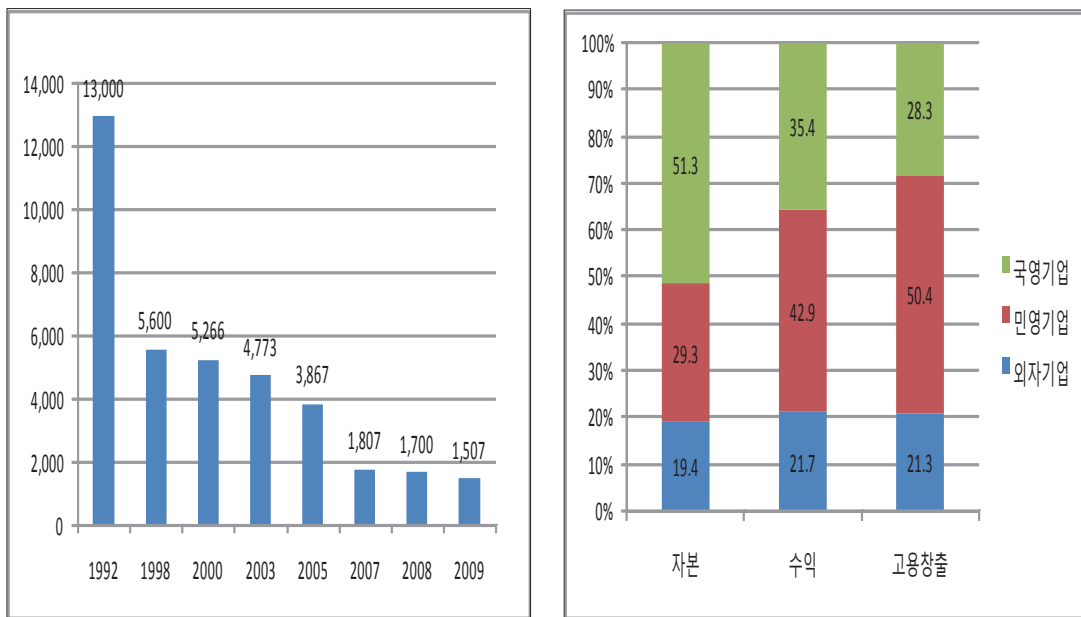
자료 : 박번순, 앞의 글, 39면 및 42면에서 재인용.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베트남의 투자에서 20% 후반을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FDI가 정체하면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중반에 머물렀으나 이후 비중은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5.8%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의 FDI 유입의 對 GDP 비율은 2007~2009년에 10%에 가까웠는데, 이는 같은 기간을 보았을 때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것이며,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편,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국영부문이 경제의 1/3을 장악하고 있다. 1992년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이후 1998년까지 약 57% (기업 수 기준)가 완료됐고, 이후 2005~2007년까지 1733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하였다. 외형적으로 국영기업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을 기

준으로 국영기업의 업체당 평균 자본 규모는 7,680억 동으로 외자기업 1,930억 동의 4배 이상이고 민영기업에 배해서는 훨씬 더 크다. 기업 당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도 국영기업이 큰데, 이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국영기업이 자원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4 - 베트남 국영기업의 수와 경제주체별 자본, 수익, 고용창출 비율>



자료 : 박변순, 앞의 글, 44면 및 45면에서 재인용.

2012년 베트남 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6%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통상산업부 또한 2012년에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무역마찰, 외환시장의 불안요소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sup>22)</sup> 건전한 재

22) 권경덕,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Kotra Executive Brief 11-028, 2011. 12, 3면.

정과 경상흑자,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3)</sup>

## II. 베트남의 투자현황

### 1. 개 관

베트남은 개방과 개혁의 시초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노동집약적 경공업 수출을 시작했고 농수산물과 원유를 주요 수출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여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함께 수출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이 급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자재의 파생수입으로 인해 수입도 더불어 급증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sup>24)</sup> 즉,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3~2006년 기간 연평균 50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142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18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수차례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 기간 약 120억 달러의 수준에서 안정시켰으나 여전히 GDP의 15%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로 베트남 외환보유고는 2008년 말 260억 달러, 2009년 말 160억 달러로 감소했고, 2010년 10월 1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sup>25)</sup>

2011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대외 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증가 금액 31억 달러를 포함해 약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자금 유입은 지속되어, 베트남 경제의 성

23) 김도훈, 2011년 베트남 경제 종합 및 2012년 전망, <http://cafe.naver.com/kosepabroad/142>

24) 수출은 1990년 24억 달러에서 1999년 115억 달러로, 2011년에는 96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990년 27억 달러에서 1996년 116억 달러, 2011년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25) 박번순, 앞의 글, 42면.

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자국 내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데, 실제로 FDI 실행액은 2010년만 보더라도 경상 GDP의 10%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이다.

<표 2 - 베트남 업종별 외국인 투자 현황 (1988-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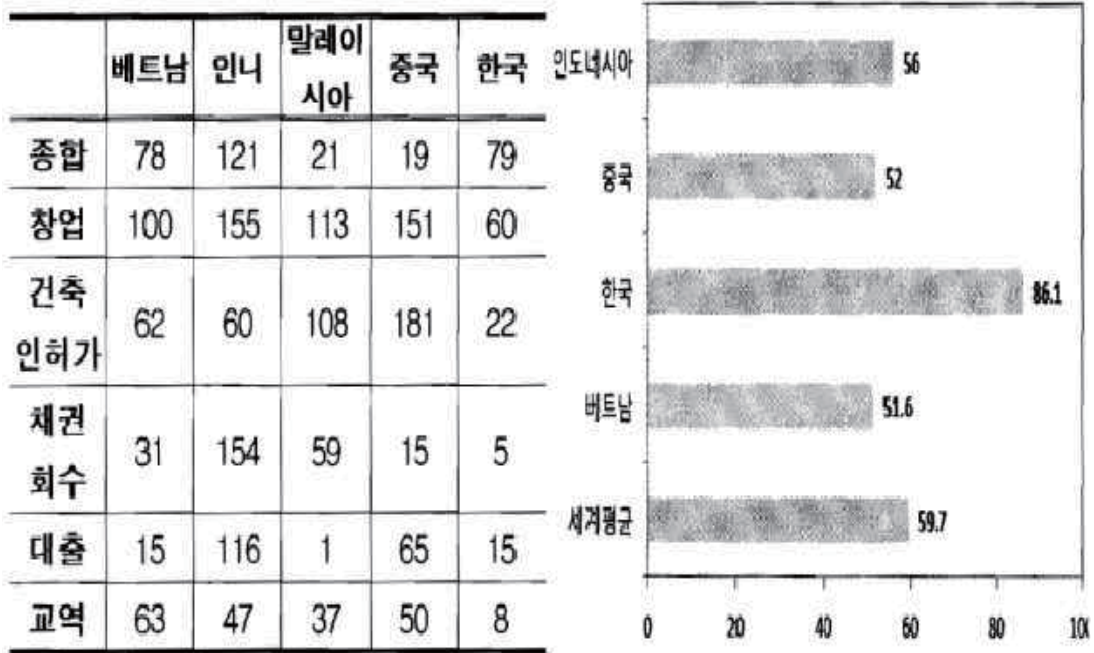
업종(분야)	건 수	총 투자금액	실행금액
제조, 임가공	7,987	930억 달러	345억 달러
부동산개발	373	470억 달러	114억 달러
건설	839	125억 달러	40억 달러
호텔, 외식서비스	314	118억 달러	32억 달러
전력, 가스, 수도	68	74억 달러	16억 달러
정보통신	713	57억 달러	33억 달러
합계	13,664	1,979억 달러	681억 달러

자료 :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한편, 베트남의 투자 환경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조사 2011’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183개국 중 78위로 중위권이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제 자유도에 대한 점수도 51.6으로 183개국 중 139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UNCTAD에서 발표하는 투자실행지수(Inward FDI Performance Index)<sup>26)</sup> 순위에서 베트남은 141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였다.

26) • 투자실행지수 =  $\frac{\text{베트남투자유입규모}/\text{세계투자규모}}{\text{베트남 GDP규모}/\text{세계 GDP규모}}$

<그림 5 - 주요국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 순위 및 경제자유도 지수>



자료 :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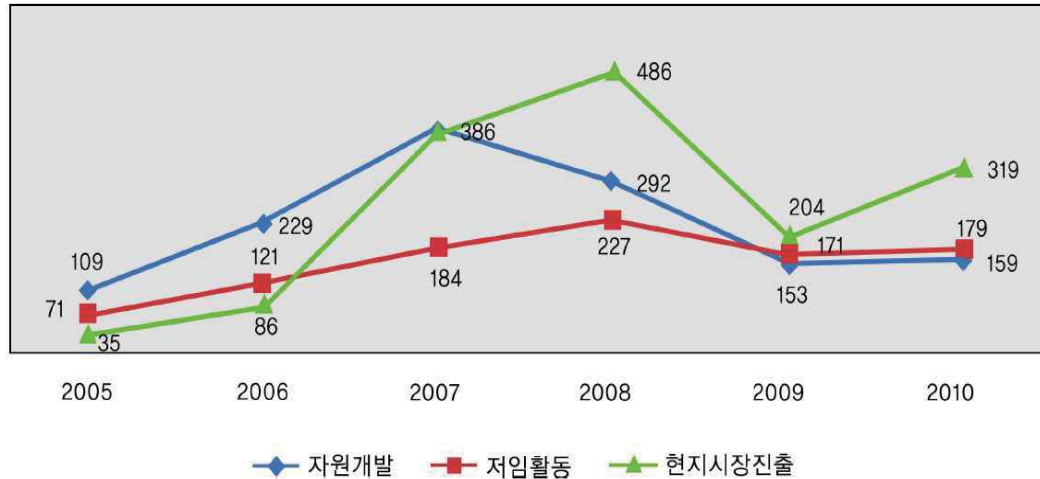
자료 : 해리티지 재단

한편,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주로 국가 주도로 추진이 되어 왔기에 민간 및 외국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됐으며, 그 비율은 전체 투자건수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투자국은 뉴질랜드, 호주, 일본 순으로 금과 석회석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특히 “탐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며, 특히 베트남 내 매장량이 풍부한 모래석재 등 건설기자재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27)</sup>

27) 박동욱, 베트남, 광물자원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H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m65Gfm6ofpO-tH6BfkBsaGhpR7ggAN5HZOQ!!/?id=2109088&workdist=read](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H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m65Gfm6ofpO-tH6BfkBsaGhpR7ggAN5HZOQ!!/?id=2109088&workdist=read)

<그림 6 - 연도별 투자동기에 따른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단위: 개,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왕설매 외,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2012. 4, 107면에서 재인용.

## 2. 투자 여건<sup>28)</sup>

### (1) 장 점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기관 및 컨설팅회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베트남 공산당의 1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유교문화권의 국가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에서 보이는 정정 및 치안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막강 파워를 갖고 있으며 정신적 지주였던 호치민 주석 사후에 집단 지도체제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권력의 갈등보다는 조화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8) KOTRA, 「투자실무가이드 - 베트남」, 2009, 33-42면.

한편, 투자에 있어서 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8,62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3%가 30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건비 면에서도 주변 인접국가와 일반 생산직 초임을 비교하였을 때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sup>29)</sup> 이러한 점은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도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가입, 1998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 진입노력을 해오다 2007년 1월 WTO에 공식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됐다. 그런데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베트남 법령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6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투자법, 기업법 등은 내외국인 차별을 대부분 없애면서 외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많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단 점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역시 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부족이 외국인투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sup>30)</sup>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비용은 대부분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충당되고 베트남

29) KOTRA, 「Post-Chin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보고서」, 2009. 참조.

30) 노승희,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0집 제6호, 2008. 12, 3316면.

정부 자체 자금 투입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인프라 구축은 매우 더딘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의 토지를 대토 받아 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BT(Build and Assistance), BOT(Build, Operation and Transfer) 방식 등의 투자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어려워 조심스런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컨대 전력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발전시설 건설 지연에 따라 2013년까지 전력난이 예상되므로 생산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기업인 경우에는 공단에 입주하더라도 자체 예비 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에 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최악의 상태를 예견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위에서 장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지만, 사실 고급 인력이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하노이나 호치민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외국어(한국어 또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무실 직원과 공장 중간관리자 역할의 고급 인력 채용이 어렵고, 고급 인력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일자리 찾기를 선호하며 고급인력 양성기관도 대도시에 몰려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180개 국가 중 121위(1위 덴마크, 한국 40위)로 2007년에 비해 2계단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베트남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커미션 문화에 기인한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같은 행정절차라도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처리 방법도 담당자에 따라 상이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외국인기업들이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sup>31)</sup>

31)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세관과의 관계, 세무당국과의 관계 등에서 Under Table Money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복잡한 행정절차는 법령이 정비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행정절차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제 4 절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베트남은 외환유동성 문제 등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8,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4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업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중국의 대량 조립형 보다 중간 규모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1992년 12월 22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sup>32)</sup> 수교 당시 교역 규모는 5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1990년대 한·베트남 교역 증가율은 연 평균 19%였으며, 2000년대 들어 베트남이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양국의 무역액 성장속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역액 증가율은 50% 내외, 약 1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면서 양국은 급기야 2015년에 교역 규모를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데에 합의하고 무역과 관련하여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 까지 검토하고 있다.

---

가 필요한 게 현실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 시 이러한 부분은 “인사” 수준이어야 하며, 절대 “뇌물” 수준으로는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제조업처럼 100% 투자 허가가 나오는 분야가 아닌 부동산 개발 등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의 경우, 적지 않은 Under Table Money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32) 김동규, “한국-베트남 간 경제현황과 교역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2010. 3, 286면.

특히, 두 나라는 2001년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 시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중점 협력대상 국가로 지정, 무상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2008년 베트남 총리의 방한 및 국회의장의 베트남 답방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관계 설정에 합의한 것은 경제 분야를 위주로 한 관계에서 탈피하여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양국 간 협력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對 베트남 경제협력은 무역에서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투자에서는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이 주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 위주였으나, 2005년부터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였다.

2010년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은 96억 달러, 수입은 33억 달러로 6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실행액은 2010년 말 현재 77억 달러 수준으로 대만의 97억 달러에 이어 2위에 이르며, 베트남의 입장에서 한국은 9위의 수출시장으로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보다 수출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부족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sup>33)</sup> 베트남과 장기적인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외불균형이 큰 베트남에 대해 일본과 같이 무역수지 균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트

33)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63억 달러(베트남 2위의 적자국)에 달해 베트남의 불만이 크지만, 일본은 700만 달러에 불과해 베트남의 불만이 적다. 박변순, “베트남의 대외불균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11. 2. 22, 11면.

남으로부터 광물자원 등을 수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자원협력위원회는 1979년 인도네시아와 처음 구성한 이래 2002년까지 약 7개국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사항들을 연례적으로 논의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정책으로 2007년까지 19개국과 추가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총 25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원협력위원회와 함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개국과 정상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sup>34)</sup>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2001년 2월부터 한-베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데, 2010년 ‘제7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베트남 북부 네안 지역의 희토류 광상을 공동 탐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한국 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소간 연구조사협력양해각서(ROA)를 체결하였다.<sup>35)</sup>

---

34) 자원협력위원회는 1970년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합자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주요 자원보유국 등과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설치, 정부 간의 협력 채널로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자원보유국은 유망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우리는 자금이나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는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상대국에는 고용창출이나 인프라 개발, 관련 산업의 교역 확대 등을 제공한다.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YpzLPFLRfyPjLJv7Ik9CF2C3pRtZWkyyBrVt0nh0GlpvThgPwmM1!900395176?id=006624>

35) 한-베트남,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에너지데일리, 2010. 12. 22, [http://www.konetic.or.kr/?p\\_name=env\\_news&query=view&sub\\_page=ALL&unique\\_num=158702](http://www.konetic.or.kr/?p_name=env_news&query=view&sub_page=ALL&unique_num=158702) 과거 우리 기업은 대표적인 생산광구로서 베트남 남부해상의 15-1광구(참여지분 23.25%), 남동부해상 메콩분지인 11-2광구(참여지분 75%)를 비롯하여 총 5개 광구에 참여하였으며, 3개의 탐사광구에 참여하였고 2009년 중반 4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종료하였다. 제6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6. 2, 3면.

가장 최근인 2012년 3월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원회’를 갖고,<sup>36)</sup> 한-베트남 에너지 사업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현재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페트로 베트남 (PETRO VIETNAM)과 협력하여 베트남 및 제3국에서의 공동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협력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한-베트남의 FTA 협상 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자원의 협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sup>37)</sup>

---

36) ‘한-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원회’는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가 지난해 5월 설치된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산하로 편입되면서 설치됐다. 한-베트남 에너지사업 협력 강화, 동아economy, 2012. 3. 23,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20323/44981983/1>

37) 韓·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보도자료, 2012. 2. 14, 8면 및 10면.

## 제 3 장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 제 1 절 개 관

베트남의 주요 개별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베트남의 법령체계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베트남의 규범 체계>

규 범	제정기관	비 고
- 헌법(The Constitution) - 법률(Laws / Codes) - 의결(Resolutions)	국회	예산, 정책
- (위임)법률(Ordinances) - 의결(Resolutions)	국회상임위원회	의안, 청원 심의 및 심사
- 명령(Order) - 결정(Decision)	국가 주석	대통령령
- 시행령(Decrees) - 의결(Resolutions)	정부	
- 결정(Decisions) - 지시(Directives)	수상	총리령
- 시행규칙(Circulars) - 결정(Decisions)	각부장관, 부급기관장	부령

자료 : Allens Art Robinson, *Legal Guide to Investment in Vietnam*, 2010, p. 6.  
을 수정 보완하였음.

베트남의 국회는 2001년 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유일한 헌법 및

법률의 규정기관'이다. 이 요지는 앞에서 언급한 '법규 규범문서 제정법'에도 확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인민이나 기업,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에게 베트남의 입법기관은 국회만이 아닌 정부, 그리고 각 부로 비쳐질 것이다. 제정된 법규의 수나 제정된 법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베트남 정부나 각 부는 국회를 능가하는 입법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이 불만으로 많이 토로하는 '규칙의 빈번한 변경'은 정부나 각 부가 제정한 법규문서로서 베트남은 법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미정비 분야의 법을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38)</sup>

베트남 헌법은 우리의 그것과 달리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sup>39)</sup> 그리고 베트남의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헌법과 다른 법규범의 관계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순서(헌법 제40조, 제75조, 제90조, 제117조 등)인 우리나라와 형식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또한 베트남 법의 경우, 국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정부의 議定'에 대해 해당 법률의 시행세칙의 제정을 위임하고 '정부의 議定'이 '부의 통지'에 대해 해당 시행세칙의 '시행지도규칙'을 위임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의 통지'에는 '위반의 처리' 조항을 갖는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보에 모든 것이 게재되지 않으며 또한,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 많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38) 계경문 외,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0-131면.

39) 박영길,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58면.

40) 다만, 이것은 문헌상의 표현일 뿐 베트남은 분명 “공산당 우위”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실제 효력에 있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지시 또는 의결이 상위 법령에 사실상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면이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계 연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원 관련 법제에 있어서, 베트남은 광물자원을 자원 그대로 수출하기 보다는 자국 내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과 함께 전략자원으로서의 수출 및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sup>41)</sup>

그리하여 1986년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석유법(1987), 광물법(1996), 외국인투자법(2001)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석유, 대륙붕 개발, 광물 개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sup>42)</sup> 최근 광물법, 석유법 및 투자법 등을 개정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 <표 4 - 베트남의 원자재 관련 법제의 주요 현황>

2010년 광물법
2010년 환경보호 세금법(Environmental Protection Tax Law)
2010년 비농지 사용 세금법(Law on Non-Agricultural Land Use Tax)
2009년 로열티법(Law on Royalties)
2008년 석유법
2005년 통합투자법
2005년 환경보호법
2004년 토지(국토)법
2004년 산림보호개발법(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2000년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법

독특한 점은, 광물과 석유·가스에 관한 주무관청이 다르다는 점인데, 전자의 경우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부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광물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41)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01?1=1&workdist=read&id=2121145](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01?1=1&workdist=read&id=2121145)).

42) 베트남에는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 사무소의 광업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있는데, 1996년 3월 20일자 국회에 의해 공포된 광업법 및 2005년 12월 27일자 광업법 이행에 관한 정부 법령 No.160/2005/ND CP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업에 있어 국내와 해외 투자부문 모두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지정된 소규모 광물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광물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후자의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석유 계약을 평가하고 총리에게 심의·승인을 요청하며, 석유계약자에게 투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존의 석유를 담당하던 기획투자부로부터 이관된 것이다.<sup>43)</sup>

더 나아가 2010년 8월 16일 베트남 정부는 지질 및 광물 기초 조사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광물 자원 및 광업 활동에 대한 국영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지질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지질광물국(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 of Vietnam)을 베트남 지질광물총국(GDGMV,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 of Vietnam)으로 승격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천연자원환경부의 직능과 직무, 권한, 조직 구조를 개정 및 보완하는 부령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지질광물총국은 준비 및 조직 구성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sup>44)</sup>

## 제 2 절 광물법제

### I. 체 계

2010년 11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기존 2005년 광물법(1996년 광물법의 개정판)을 대체하는 광물법(이하 ‘신광물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sup>45)</sup>

---

43) <http://www.moit.gov.vn/web/guest/home>.

44) CCOP Vietnam, *op. cit.*, pp. 1-2. 베트남 지질광물국(DGMV)을 비롯한 기관은 보고기간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질도 제작, 광물 조사, 고형 광물 잠재성 평가 등을 비롯하여 지질자원 부문 광물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항 활동을 수행하였다.

45) 국무총리는 2011년 2월 25일 결정 No. 299/QĐ-TTg에 조인하였으며, 이는 2010년 통과된 법률에 발급되는 법률증서의 이행 목록과 해당 법률증서의 입안 및 제출을 위한 권한 위임을 공표하는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



신광물법은 총 11개 장 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5 - 신광물법의 체계>

제 1 장(제1~8조) 일반조항
제 2 장(제9~15조) 광물전략 및 마스터플랜
제 3 장(제16~20조) 미개발광물의 보호
제 4 장(제21~24조) 광물 기초조사
제 5 장(제25~29조) 광물자원 지역
제 6 장(제30~33조) 환경보호, 광물 활동에 있어서의 토지, 물 및 기술 인프라의 이용
제 7 장(제34~50조) 광물 개발
제 8 장(제51~75조) 채굴
제 9 장(제76~79조) 광물 관련 재정 및 광업권 경매
제10장(제80~83조) 광물 관리에 관한 국가책임
제11장(제84~86조) 이행 조항

그리고 본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존재형식과 주요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 신광물법의 시행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의 목록>

존재 형식	주요 목록
Dec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법 이행 법령(Decree Providing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Minerals, 2012. 4)</li> <li>- 광물법 이행 법령(Decree Implementing the Law on Minerals, 2011. 5)</li> <li>- 광물권 입찰 규제법령(Decree Regulating Auctions of Mineral Mining Rights, 2011. 5)</li> </ul>

존재 형식	주요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개발 관련 행정벌(Decree on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e Mineral Sector, 2011. 9)</li> <li>- 광물개발을 위한 환경보호비용(63/2008-ND-CP)</li> <li>- 광물개발 관련 행정절차위반(150/2004-ND-CP)</li> </ul>
Dec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및 2030 광물전략 승인결정(PM approving the Mineral Strategy to Year 2020 with Outlook to Year 2030, 2011. 5)</li> <li>- 광물개발로 인한 환경 복구와 퇴적증진을 위한 결정(71/2008 QD-TTg)</li> <li>- 광물개발 또는 미개발 자원보호와 광산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결정(219/1999/QD-TTg)</li> </ul>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개발 관련 환경보호비용 관련 법령(63/2008-ND-CP) 이행을 위한 재정부 고시(67/2008/TT-BTC)</li> <li>- 광물 수출지침 제공을 위한 산업자원부 고시(20/2008/TT-BTC)</li> <li>- 광물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징수금 및 수수료 관련 고시(20/2008/TT-BTC)</li> <li>- 미개발된 납과 아연광석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재정부 고시(39/2007/TT-BTC)</li> <li>- 환경자원부 고시(01/2006/TT-BTNMT)</li> <li>- 광물개발 독점에 관한 과세, 송금, 관리, 사용료에 관한 정부 고시(18/2003/TT-BTC)</li> <li>- 광물개발 또는 미개발 자원과 광물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결정(219/1999/QD-TTg) 및 그 이행을 위한 재정부 고시(76/2000/TT-BTC)</li> <li>- 광물개발 라이선스에 관한 보증금 및 보증금 조건부 날인 증서의 관리와 지불에 관한 절차 및 지침 제공 재정부 고시(05/1998/TT-BTC)</li> </ul>

법률에 답아야 할 중요 사항들이 대부분 하위법령의 형식 속에 주로 포함되고 있다는 특징은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과 행정부의 부패 정도에 따라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평면적인 법제 내용의 분석만으로는 기업의 진출에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광물법으로의 개정은 2005년 광물법 개정에서 광업권 부여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적으로 위임되자 이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환경악화를 초래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2010년 광물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을 축소하고 기업에게 기술과 재무 양 측면에서의 실행확실성을 요구함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고 광산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광물법은 기본적으로 면허 발급 과정의 능률화와 광물 면허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재정 상태의 부과를 비롯하여 광물 탐사 및 개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률 체계에 신규 변경을 도입하고 이를 보완한다.<sup>46)</sup>

신광물법에서 변경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탐사면허와 가공면허의 의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탐사 면허(prospecting license) 의무는 폐지되어 앞으로 광물 탐사 자격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하 “주체”)은 탐사가 제의된 지역에서 인민위원회의 서면 동의만 구해도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광물 탐사를 목적으로 노면에서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또한, 가공 면허(processing license) 의무도 폐지되어 채굴 활동 범위가 본질적으로 광물 가공인 광물 분류와 농축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46) MAYER · BROWN JSM, Vietnam's 2010 Mineral Law, *Legal Update Infrastructure Vietnam*, 14 March 2011, p. 1.

아울러, 2010년 광물법은 광물 전략과 채굴권 경매, 채굴권 발급료에 관한 신설 조항도 포함된다. 국가는 광업 면허 발급료를 징수하며 요율은 광물의 가치나 매장량, 품질, 개발 광물의 카테고리나 그룹을 토대로 한다.

또한, 라이선스(면허)를 경매로 부여하도록 하여 현재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사업자 간 유착을 유발하는 구조를 배제하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는 적격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라이선스 발급 과정의 능률화와 광물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재정적 요건을 부과하여 광물 탐사 및 개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률 체계에 신규 변경을 도입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단순히 탐광이나 개발에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관련 기관이 중복해서 갖고 있던 권한을 해소하는 등 광물자원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라이선스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는 등 시장경제 규칙에 기초한 국가관리 방법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2010년 신광물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2012년 3월 9일 광업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행령(Decree) 15/2012/ND-CP을 발표하였다. 소위 “Decree 15”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외에 베트남 광물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규범들도 이때에 같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베트남의 광업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sup>47)</sup>

---

47) Clifford Chance, Recent changes in the mining regulations of Vietnam, *VILAF*, April 2012, p. 1.

<표 7 - 광산법 일부규정 시행에 관한 2012년 3월 9일자 시행령>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제 2 조 광물 수출을 위한 조건과 표준

제 3 조 광산의 기본지질조사경비 및 광산 탐사경비의 반환

제 4 조 광산의 잠재적 평가, 광산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정보의 사용

제 5 조 광산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의 투자

제 6 조 독성 광물

제 7 조 광산 활동 결과의 보고

제 2 장 광산계획, 광산에 대한 기본지질조사, 광산구역

제 8 조 광산계획의 수립과 승인을 위한 제출

제 9 조 성, 중앙 직속 도시에서의 광산의 탐사, 개발, 사용 계획

제10조 개인 및 단체의 투자에 의한 광산에 대한 기본지질조사 투자

제11조 소규모 광산 및 분산된 광산지역의 설정

제12조 광산개발권 경매제외 지역 설정의 기준

제 3 장 광산 활동에 관한 규정

제 1 절 광산의 탐사

제13조 광산개발권 경매제외지역에서의 광산탐사허가증 발급을 위한 단체 및 개인의 선택

제14조 통상의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광산탐사를 할 수 있는 경영호(經營戶)의 조건

제15조 광산탐사권의 양도

제16조 광산개발지역 내 매장량의 정밀탐사

제17조 광산탐사허가증의 기한

제18조 탐사량과 방법의 변경

제19조 광산개발안 수립 부지 선정을 위한 지표면에서의 표본채취 및 실지 검증

제 2 절 광산 매장량의 심사와 승인

제20조 국가 광산매장량 평가회의의 조직과 활동

제21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허가증발급에 있어서의 광산매장량의 심사와 승인

제22조 광산탐사 보고 내 매장량 심사와 승인과 광산탐사결과보고 심사내용

제 3 절 광산의 개발과 광산의 개폐

제23조 광산채굴개발 및 통상의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호(經營戶)의 조건

제24조 광산개발권의 양도

제25조 광산개발허가증과 광산회수개발허가증의 기한

제26조 광산개폐 제안의 심사

제 4 장 광산활동, 광산매장량 승인 및 광산개폐 허가절차

제 1 절 접수기관, 접수형식 및 결과통보

제27조 광산활동 허가서류, 광산매장량 승인서류, 광산 개폐서류의 접수기관

제28조 광산활동 허가서류, 광산매장량 승인서류, 광산 개폐서류의 접수 및 결과 통보형식

제 2 절 서류 내 문서의 형식

제29조 발급서류, 기한, 허가증반환, 광산탐사지역의 일부 반환, 광산 탐사권의 양도

제30조 광산매장량 승인 제안 서류

제31조 발급서류, 기한, 광산개발허가증의 반환, 광산개발지역의 일부 반환, 광산개발권의 양도

제32조 발급서류, 기한, 광산회수개발허가증의 반환

제33조 광산개폐 서류

제34조 광산활동 허가발급서류, 광산매장량 승인서류, 광산 개폐서류의 서식

제 3 절 절차의 이행

제35조 광산 탐사허가 발급절차의 이행

제36조 광산 탐사 제안 심사

제37조 광산개발 허가발급 절차

제38조 광산회수개발 허가발급 절차

제39조 광산탐사 허가증 및 광산개발 허가증의 기한연장, 양도, 면적 일부의 반환 및 그 반환과 광산회수개발 허가증의 기한연장 및 그 반환에 관한 절차이행순서

제40조 광산매장량승인절차의 이행순서

제41조 광산활동 허가발급 심사 조정에 있어서의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제 5 장 광산에 관한 재정

제42조 광산개발권발급비용

제43조 광산에 관한 기본지질조사 경비

제 6 장 시행부칙

부 록 광산별 분포, 수량, 광산매장량과 자원규모

## II.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개정 법률, 즉 신광물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적용범위

신광물법은 광물자원의 기본적인 지질조사와 미개발 광물의 보호, 광물탐사 및 채굴, 도로나 영해, 영해 인접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베트남 대륙붕을 비롯한 베트남 영토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국가소유를

전제로 한다. 다만, 석유가스와 천연수(광천수나 천연 온천수 제외)의 탐사나 개발은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체계에 의하며 2010년 광물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제1조).

## 2. 광물정책 및 마스터플랜

광물과 관련하여 신광물법은 국가의 정책에 방향에 관한 입장을 천명한다(제3조~제8조). 즉, 광물 전략 및 광물 종합계획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국방 및 안보를 확보 및 증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가 뛰어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광물이 보호, 채굴, 사용되도록 한다.

또한 금속과 합금 제품이나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율이 뛰어난 기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광물의 가공과 사용에 중점을 둔 채굴 투자 사업을 장려한다. 광물의 수출을 장려하되 국내 생산에 충분한 광물 자원의 확보를 토대로 한다는 등의 다양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방향 외에 각종 광물 활동에 대한 원칙으로서 광물 탐사와 채굴 등의 광업 활동은 광물전략이나 마스터플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48)</sup>

신광물법은 자원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목적으로 한 광물전략 및 마스터플랜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각 계획기간 동안 국가는 광물 전략 및 광물 종합계획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국방 및 안보를 확보 및 증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가 뛰어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광물이 보호, 채굴, 사용되도록 한다.

우선, “광물전략”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광물개발에 관한 전략적 계획으로서 천연자원환경부(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48) 광물 탐사는 광물 매장량 및 품질, 채굴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둔 활동으로 정의된다. 채굴은 광산의 자본 구성이나 굴착, 분류, 농축, 기타 관련 활동을 비롯하여 광물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된다.



and Environment)가 20년을 전망하면서 10년마다 작성하는 문서로서 광물조사, 미개발광물의 보호, 광물개발, 채굴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금속과 합금 제품이나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율이 뛰어난 기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광물의 가공과 사용에 중점을 둔 채굴 투자 사업을 장려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광물의 수출을 장려하되 국내 생산에 충분한 광물 자원의 확보를 토대로 한다는 데에 있다. 광업 전략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전략 계획 기간에 부합하는 향후 20년을 전망하면서 매 10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천연자원환경부(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해당 광업 전략을 작성 및 제출하여 총리(PM)의 승인을 얻기 위해 타 부처와의 공조를 관장한다.

한편,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된다.

- (a) 광물자원의 기초 지질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 (b) 광물탐사 및 채굴에 관한 전국 종합계획
- (c) 건설 자재를 위한 각종 광물 카테고리의 전국적 채굴 및 사용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타 광물 유형의 채굴 및 사용에 관한 전국 종합계획
- (d) 중앙집권적 권한에 의거하는 각 지방(성이나 시)에서 수행되는 광물의 탐사와 채굴, 사용에 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도 광물전략과 마찬가지로 20년을 전망하면서 10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b) 내지 (d)의 계획은 10년을 전망하면서 5년마다 정하도록 한다.

신 광업법은 지방에서 수립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에 있어서, 즉 위에서 열거한 전 3개 유형의 마스터플랜에 관하여는 각 유형마다 별도의 조문으로 편재하여 그것이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제11조~제14조).

### 3. 미개발 광물자원의 보호

제3장으로 위치하고 있는 미개발 광물의 보호에 관하여 신 광업법은 다양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부, 기관, 개인 및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미개발 광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주체별로 보호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제16조~24조).

### 4. 지질 기초조사

지질 기초조사는 마스터플랜에서 승인된 바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천연자원환경부)가 실시한다. 특정 조사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후 탐광단계에서 지질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법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24조).

### 5. 광물자원 지역

이 법은 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광물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허용 및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한다(제25조~제29조).

- (a) 소규모의 분산된 광물자원 지역을 포함한 광업활동지역
- (b) 광업활동 금지지역
- (c) 광업활동 일시금지지역
- (d) 국가광물 유보지역

특히 (d)의 국가광물유보지역은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광물이 포함되는 지역 또는 광물을 포함하

되 유효 채굴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 6. 환경보호 등

광물 활동과 관계있는 기관 및 개인은 기술, 시설 및 자재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투자 사업에 있어서 환경보호나 복원 등에 관한 대안과 비용 및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물 활동을 수행하기 전, 그 주체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호 및 복원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한편, 본 법 상의 광물 활동을 위한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임차를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교통 및 통신수단과 전기 기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수자원법에 따라 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제33조).

## 7. 광물의 탐사 및 채굴

신광물법에 의거하는 광업 라이선스는 2개 유형, 즉 광물 탐사 라이선스(mineral exploration license)와 광물 채굴 라이선스(mineral mining license)의 단 두 개뿐이다. 즉, 2010년 광물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기존의 예비조사허가(prospecting permit)와 가공라이선스(processing license) 제도를 폐지하여 라이선스의 유형을 대폭 간소화하였다는 점이다. 예비조사의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광물 탐사 자격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탐사가 제의된 지역에서 인민위원회의 서면 동의만 구해도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광물 탐사를 목적으로 표본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고,<sup>49)</sup> 또한 가공라이선스가 폐지되어 채굴의 활동범위는 본

49) 그러나 광물 탐사를 원하는 조직은 일정한 조건, 즉 (i)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ii) 지질탐사 관련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광물 탐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질적으로 광물 가공의 과정인 광물 분류와 농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라이선스발급의 권한은 2원화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자재용 광물, 이탄(泥炭) 탐광 및 채굴, 소규모 채굴은 각 지방(성)의 인민위원회가, 그 외의 경우는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가진다. 즉,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의 설명 및 공표대로 산발적인 소규모 광물을 포함하는 광물 탐사라이선스, 공용 건설자재와 토탄, 광물에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라이선스 및 개별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천연자원환경부는 기타 일체의 경우로서 광물 탐사라이선스와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개별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한 국가기관은 당해 라이선스를 연장, 철회하거나 명도에 동의하고, 탐사 및 채굴 현장의 일부 명도에 동의하거나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인 광물 탐사 또는 채굴권의 양도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신광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탐사라이선스와 채굴라이선스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 탐사라이선스와 채굴라이선스의 비교>

	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활동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법(Law on Enterprises) 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li>-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li>-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li> </ul>

무 경험이 있으며 광물 탐사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는 기술담당자를 둘 것, (iii) 탐사지질학이나 수리지질학, 지질공학, 지구물리학, 시굴, 굴착, 기타 관련 전공분야의 교육을 받은 기술담당직원을 둘 것, (iv) 광물 탐사작업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장치를 보유할 것. 광물 탐사업체는 광물 탐사라이선스를 최대 5개까지 취득할 수 있다.

	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나 지점이 소재하는 해외 기업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탐사라이선스 발급 신청서</li> <li>- 광물 탐사 제안서</li> <li>- 탐사지역의 지도</li> <li>- 유독성 광물을 탐사할 경우, 시행되는 환경보호 관련서류</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외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 설치된 대표 사무소나 지점에 관한 결정 사본</li> <li>- 필수 지분 인증</li> <li>- 미탐사 지역 채굴권 경매에서의 낙찰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굴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li> <li>- 채굴지역의 지도</li> <li>- 광물 매장량을 승인하는 유관 국가기관의 결정</li> <li>- 승인결정과 투자인증서 사본을 동봉하는 채굴 투자 프로젝트</li> <li>-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환경보호조치</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li>- 채굴권이 경매에 취득되는 경우, 낙찰확인서</li> <li>- 필수 지분 인증</li> </ul>
라이선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탐사를 수행하는 기업명</li> <li>- 광물 유형과 탐사 현장의 위치 및 측정</li> <li>- 탐사 방식과 용량</li> <li>- 광물 탐사 기간</li> <li>- 재정 의무 및 기타 관련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굴을 수행하는 기업명</li> <li>- 광물 유형과 채굴 현장의 위치 및 측정</li> <li>- 매장량과 산출량, 채굴 방식</li> <li>- 채굴 기간</li> <li>- 재정 의무 및 기타 관련 의무</li> </ul>
라이선스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개월 이내</li> <li>- 연장 가능. 단, 해당 연장의 총 지속기한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각 연장 시, 탐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발급라이선스에 규정된 탐사 현장을 30% 이상 명도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이내</li> <li>-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단, 해당 연장의 지속기한은 총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p>※ 광물 탐사 기한은 (i) 광물 탐사 제안을 실행하고, (ii) 광물 매장량을 승인에 제출하고, (iii) 광업 투자 프로젝트를 입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구성</p> <p>※ 탐사 지속기한 안에 광업 투자 프로젝트(해당되는 경우)를 입안해야 하며, 프로젝트 투자 인증서를 취득하여 채굴라이선스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 함</p>	
	<p>권리가 타 업체에 이전되는 경우, 라이선스의 지속기한은 기존 발급라이선스의 나머지 지속기한으로 함</p>	
<p>두 라이선스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 지속기한 내에 광업 투자 프로젝트(해당되는 경우)를 입안해야 함</li> <li>- 프로젝트 투자 인증서를 취득하여 채굴 라이선스 신청서류에 포함할 것</li> <li>- 경매(예: 채굴권)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광물 탐사를 수행한 업체는 광물 탐사 라이선스 만료일 이후 6개월간 현장 채굴에 우선권이 부여</li> <li>- 현장 탐사를 진행한 업체가 우선기간 만료 시 탐사지역에 대해 채굴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굴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우선권이 상실</li> <li>- 라이선스 발급기관이 타 업체에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경우(예: 광물 탐사를 최초로 수행한 업체를 제외), 해당 타 업체는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전 최초로 탐사를 수행한 업체에 라이선스 매장량에 관한 탐사비용을 상환해야 함</li> </ul>	

	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라이선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선택되거나 미탐사 지역에 대한 채굴권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며, 광물 탐사 실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주체는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조직과 계약을 체결</li> <li>- 광업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광물 탐사 제안서(광물 탐사 제안서)를 보유하며 유독성 광물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서면 허가 취득 필요</li> <li>- 광물 탐사 제안의 이행에 소요되는 총 투자자본 가운데 5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가 완료되고 종합계획에 따라 광물 매장량이 승인된 지역에 대해 채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li> <li>- 채굴 투자 프로젝트는 전문 인력 채용과 장비 및 기술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적절한 첨단 채굴 계획을 포함하며 유독성 광물의 경우 총리의 서면 허가 취득 필요</li> <li>-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또는 환경보호조치</li> <li>- 채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 투자자본 가운데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li> </ul>
책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굴에 사용되는 기술 기반시설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건설과 법률에 따라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복지 사업 건설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li> <li>- 채굴 투자 사업에 따라 기술 기반시설 건설 및 환경 보호 및 재건과 채굴을 결합하고, 업체가 기술 기반시설이나 건설공사, 자산에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손실액에 따라 수리나 유지보수, 신규 건설을 수행하거나 법에 따라 보상</li> </ul>

	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임차하는 경우 현지인에 우선권을 부여</li> <li>- 채굴에 사용된 토지가 복구되는 개인의 업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 현재 채굴사업을 위해 복구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의 보상 지급과 지원, 재정착은 토지 관련 법률이나 기타 관련법에 따름</li> </ul>

### 8. 광물관련 재정 및 광업권 경매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경매에 의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별도로 규정한 비경매 지역에서는 권한을 갖는 관리기관이 발급한다. 비경매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탐광을 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굴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경매에 필요한 원칙과 조건은 정부가 정하게 되는데, 광업권 경매에 관한 신설 규정을 통하여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부정적 의미를 암시하여 왔던 “청탁(ask-give)”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50)</sup>

### 9. 채굴 지역과 주민의 이익 보호

국가는 채굴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굴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충당한다. 채굴 업체는 아래 각 호를 책임진다.

50) MAYER · BROWN JSM, *op. cit.*, p. 2.



- (a) 채굴에 사용되는 기술 기반시설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건설과 법률에 따라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복지 사업 건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원한다.
- (b) 채굴 투자 사업에 따라 기술 기반시설 건설 및 환경 보호 및 재건과 채굴을 결합하고, 업체가 기술 기반시설이나 건설 공사, 자산에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손실액에 따라 수리나 유지보수, 신규 건설을 수행하거나 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c) 광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임차할 때 현지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d) 채굴에 사용된 토지가 복구되는 개인의 업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한다.

현재 채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복구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의 보상 지급과 지원, 재정착은 토지 관련 법률이나 기타 관련법에 따라 수행된다.

#### 10. 국영 광물 관리에 대한 책임

정부는 균일한 국영 광물 관리를 시행한다. MONRE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전국 광물에 대한 국영 관리를 행사한다. 타 국가 규제기관에는 기타 부처와 각급 인민위원회가 포함된다.

### 제 3 절 석유 및 가스법제

#### I. 체 계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국가 및 인민소유를 규정한 베트남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와<sup>51)</sup>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및 환경보호를

---

5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7조 :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

규정한 제29조<sup>52)</sup> 및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한 이 법은 베트남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유의 개발 및 생산행위에 관하여 규율한다.

석유법은 1993년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000년과 2008년에 개정되었다. 석유법은 탐사, 개발, 석유와 가스 생산에 적용된다. 석유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와 가스를 같이 규율하고 있는 까닭에 “석유가스법”으로 불리고 있다.<sup>53)</sup>

산업 및 무역부는 원칙적으로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규제 기관이지만, 석유법 제14조에서 독점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PVN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sup>54)</sup>

석유가스법은 총 9개 장, 5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9 - 석유가스법의 체계>

제 1 장(제1~3조) 일반조항
제 2 장(제4~14조) 석유활동(petroleum operations)
제 3 장(제15~27조) 석유계약(petroleum contract)
제 4 장(제28~31조)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제 5 장(제32~37조) 로열티, 세금 및 수수료

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5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29조 :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53) 이 법상의 모든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활동은 페트로 베트남(PVN)에 의해 독점적으로 할당된다. 다만 가스의 이동, 처리 및 분배와 같은 다운 스트림 석유 작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4) YKVN, Overview of Vietnam Oil & Gas Sector, Report no. 1 on Vietnamese Oil & Gas Sector, March 17, 2009, pp. 51-52.

제 6 장(제38~39조) 석유활동의 국가 관리
제 7 장(제40~42조) 석유활동 검사
제 8 장(제43~46조) 위반행위 처벌
제 9 장(제47~51조) 이행조항

그리고 그 하위법령의 존재형식과 주요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 석유가스법의 이행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의 목록>

존재형식	주요 목록
Dec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이용 및 탐사 계획 양여에 관한 석유법 및 규칙 이행 규정(115/2009/ND-CP 24/12/2009)</li> <li>- 액화 석유가스 거래(107/2009/ND-CP 26/11/2009)</li> <li>- 원유가격 상승 시 석유 계약자의 이익에 대한 추가 징수 (100/2009/ND-CP 03/11/2009)</li> <li>- 석유활동 관련 연안 직접투자에 관한 법령(Decree No. 121/2007/ND-CP, 2007.7.25)의 수정(17/2009/ND-CP 16/02/2009)</li> <li>- 석유활동 관련 연안 직접투자(121/2007/ND-CP 25/07/2007)</li> <li>- 석유 관련 행정 위반 제재(145/2006/ND-CP 30/11/2006)</li> <li>- 석유생산 분담(sharing)에 관한 모델계약 공표(139/2005/ND-CP 11/ 11/2005)</li> <li>- 석유 안전(security and safety) 보호(03/2002/ND-CP 07/01/2002)</li> <li>- 석유법 세부 이행(48/2000/ND-CP 12/09/2000)</li> </ul>
Dec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남부 대륙붕의 석유 구역 표시(46/2007/QD-TTg 03/04/2007)</li> <li>- 액화석유가스 병입 절차 시 기술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6/2006/QD-BCN 16/10/2006)</li> <li>- 액화석유가스 탱크 유입과 수송 안전에 관한 규정(28/2006/QD-BCN 16/08/2006)</li> <li>- 석유활동 관련 공급 목록(827/2006/QD-BKH 15/08/2006)</li> <li>- 석유 광구의 보존과 폐기 규정(399/QD-BCN 24/02/2006)</li> </ul>

존재형식	주요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자원과 매장량의 분류와 석유 매장 보고 개선 규정(38/2005/QD-BCN 06/12/2005)</li> <li>- 베트남 석유회사에 배분된 투자자본 관리(96/2004/QD-BTC08/12 2004)</li> <li>- 석유 비축지 건설 투자 규정(422/2003/QD-BTM 11/04/2003)</li> <li>- 2010년까지 석유비축지에 관한 국가시스템 개발계획 승인(93/2002/QD-TTg 16/07/2002)</li> <li>- 석유 활동 관련 해외투자에 대한 특혜와 인센티브(116/2001/QD- TTg 02/08/2001)</li> <li>-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활동 서비스 관련 공급 및 장비 목록(229/2001/QD-BKH 18/05/2001)</li> <li>- 석유 사업 관리(111/2000/QD-TTg 20/09/2000)</li> <li>- 석유활동 관련 안전통제 규정(41/1999/QD-TTg 08/03/1999)</li> <li>- 심해, 연안지역 및 특히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석유 활동 투자 장려(216/1998/QD-TTg 07/11/1998)</li> </ul>

## II. 주요 내용

1993년 6월 제정된 석유법은 2000년 6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고, 최근 석유법의 다수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률 No.19/2000/QH10에 의거하여 석유법 개정 및 추가법을 공포하였다.

2008년 개정 석유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의 규정의 일부 추가

석유와 가스(Oil and gas), 권장 석유가스 투자 프로젝트(Encouraged oil and gas investment project), 석탄가스(Coal gas), 고정 시설물(Fixed work), 장비(Equipment) 등이 추가되었다(제3조).

## 2. 환경보호 의무 추가

작업 조치나 작업 단계, 전체 석유가스 계약을 완료한 후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정 건조물과 석유가스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와 수단을 철거하고 법률에 따라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제13조).

## 3. 페트로 베트남의 지위 및 권한

Vietnam Oil and Gas Group은 국영기업으로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과 석유가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4조).

## 4. 석유계약의 기한

석유가스 계약의 기한은 25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이 가운데 탐사와 시굴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권장 석유가스 투자 프로젝트와 천연가스 탐사, 시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석유가스 계약 기한은 30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이 가운데 탐사와 시굴 기간은 7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석유가스 계약 기한은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탐사 및 시굴 기간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총리는 탐사 및 시굴 기간이나 석유가스 계약 기한의 연장을 심의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업적 발견을 공표하였으나 판로를 찾지 못했거나 적절한 송유관이나 가공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발견한 가스 지역을 보유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보유 시한은 5년이며 특별한 경우 추후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판로를 물색하고 적절한 송유관 및 가공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시공사는 석유가스 계약에 의거하여 약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 석유가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의거하는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사태에 의한 중지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경우 중지 시한은 3년 이내로 총리에 의해 결정된다.

탐사 및 시굴 기간의 연장 기한과 상업적 타당성이 발표된 가스 발견 지역의 보유 기간, 불가항력적 경우나 기타 특별한 경우 석유가스 계약에 의거하는 권리 및 의무 이행의 중지 기간은 석유가스 계약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가스 계약은 기한에 앞서 해지될 수 있다. 단, 시공사는 약정한 의무를 완료하고 해당 해지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한 경우 석유가스 계약에 의거하는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기 위한 조건과 탐사 및 시굴 기간이나 석유가스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를 정한다.

## 5. 석유계약의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양도하는 석유가스 계약 일부 또는 전부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a) 양수인은 양도인이 체결한 석유가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 (b) 투자법(investment law)에 따라 자본 및 프로젝트의 양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석유가스 계약 일부나 전부의 양도는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투자증서의 규정대로 발효된다.

한편, Vietnam Oil and Gas Group은 양도되는 석유가스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매입할 선택권을 갖는다.

양도인은 제세와 제수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세와 수수료를 납부한다.

#### 6. 석유계약자의 권한

시공사는 석유가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되, 본 계약 체결시 베트남 조직 및 개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석유가스 탐사와 시굴, 현장 개발, 이용과 직접 관련된 석유가스 서비스 공급 계약의 입찰 및 체결은 정부가 공포하는 별도의 규정을 준수한다.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항공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거나 석유가스 활동에 항공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당사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6조).

#### 7. 석유계약자의 권리

수입세 및 수출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출입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하도급자는 동법 제28조 조항 1, 제a항, 제c항, 제e항에 명시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외국인 조직이나 개인인 하도급자는 석유가스 서비스 영업을 통해 회수한 경비나 획득 이익을 해외로 이체할 수 있다(제28~29조).

#### 8. 석유계약자의 의무

- (a) 가스 활용 및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를 토대로 하는 소유권이 준용되는 천연가스, (b)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소유권이 준용되는 원유에 있어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계약자는 이를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 9. 로열티, 세금 및 요금 추가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 석유가스 시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베트남 국민, 석유가스 합작기업과 하도급자는 세법에 따라 제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Vietnam Oil and Gas Group이 석유가스 활동에서 징수하는 법인세후 수익은 법률에 따라 석유가스 프로젝트 개발 투자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Group에 할당된다.

## 10. 석유활동의 국가관리

정부는 석유가스 활동의 통합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에 규정하는 석유가스 활동의 국영 관리를 담당한다.

- (a) 자체 역량에 따라 석유가스업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문서와 전략, 마스터플랜, 계획을 공표하거나 해당 공표를 위하여 유관 국가 기관에 이를 제출한다.
- (b) 석유가스계약과 투자법에 따른 석유가스 투자 프로젝트, 매장량 보고서, 종합 계획 및 현장 개발 계획, 석유 가스 부지 및 계약 입찰 결과, 외국과의 중복 지역에서 진행되는 석유가스 활동을 위한 해외 협력 제도, 석유가스 탐사 및 시굴 기간이나 석유가스 계약의 기한 연장, 불가항력적 상황과 특별 경우 석유가스 계약의 중지시기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주된 책임을 진다.
- (c) 부지 목록과 부지 한계의 분류 및 조정을 작성하고 공표를 위하여 총리에게 제출한다.
- (d) 석유가스 탐사와 시굴, 개발, 국내 판매, 수출에 관한 추이 및 실적을 검토, 감시, 보고한다.



- (e) 계약 지역 조기 탐사에 관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승인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석유가스 활동을 위한 고정 건조물과 장비, 수단의 철거, 법률에 따른 환경 복원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위반을 조사 및 처리한다.
- (f) 관련 가스의 연소를 허용하고 시공사가 승인된 현장 개발 계획에 의거하는 일정에 따라 현장을 개발하거나 석유가스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현장을 취소한다.
- (g)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교육과 보유, 육성을 관리하고 석유 가스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 유치에 적합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입안한다.
- (h) 석유가스에 관한 해외 협력을 수행한다.
- (i) 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을 공표, 배포, 교육한다.
- (j) 석유가스 활동에 관한 위반을 조사, 검사, 처리하고 이에 관한 고발을 해결한다.
- (k) 법률에 따른 석유가스 활동의 국영 관리에 관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직무와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따른 석유가스 활동의 국영 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성 및 중앙에서 운영하는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석유가스 활동의 국영 관리를 수행한다.

## 11. 기 타

석유법의 다수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률 No.19/2000/QH10에 의거하여 개정 및 추가된 1993년 석유법 상의 제33조 내지 제37조(로열티, 세금 및 수수료 규정), 제39조(석유활동 관련 국가 관리의 일부)를 삭제한다.

## 제 4 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 제 1 절 개 관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도모하며,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7년 12월 29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는 베트남 헌법(제25조)에 따라 베트남 내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자본의 소유권과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윤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투자의 최적 조건과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7년 제정된 투자법은 그 후 1990년, 1992년, 2000년 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은 2005년 말 외국 투자자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해 온 외국인투자법과, 1998년 제정되었던 별도의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투자법을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투자법의 제정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의 투자환경의 정비뿐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적인 투자법의 마련이 필요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sup>55)</sup> 신투자법은 내외국 기업 간 차별을 없앴고, 과거 금지되었던 유통업이나 무역업에 대한 업종도 심사를 거쳐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투자 업종면에서 외국기업들에게 과거 보다 많이 개방한 것으로 보이며, 구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이나 공무원의 해석에 많이 의

55) 한국농어촌공사, 「베트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27, 2009, 89면.

존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신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투자 관련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투자법 시행령과 기업법 시행령 등은 2006년 9월 22일 최종 확정되었는데, 신투자법 발효와 약 3개월간의 시차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내용은 투자법 임시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 및 의회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래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법(외국인투자법)과 신법(신투자법)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7)</sup>

<표 11 - 신법(신투자법)과 구법의 주요 변화>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근거법령	- 통합투자법 (Common Investment law)	-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56) 그러나 신투자법에 대하여도 ① 투자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의 기능이 없어 별도의 기업법 적용이 된다는 번거로움, ②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특수 산업분야에 투자허용 여부 규율 기능 없어 해당분야 관련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③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 간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점(간접투자 시 투자허가 받을 필요 없음), ④ 조건부 투자분야가 모호하고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투자희망 분야에 대해 투자법에 명시된 품목명만 확인하지 말고 투자 승인기관의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⑤ 대규모 투자의 경우 국가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자체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⑥ 분쟁발생 시 외국중재 기관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계약의 경우 베트남 중재기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재기관의 판결에 따라 투자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 ⑦ 외국은행 지점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7)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2009, 76-80면.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투자법 시행령 (Decree 108/2006/ND-CP)</li> <li>-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164/2003/ND-CP부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24/2000/ND-CP 및 27)</li> <li>-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가이드(Circular 12)</li> <li>- 외국인 투자관련 법인세법 상세가이드(Circular 13)</li> <li>- 법인세법 의정서(Decree 164 /2003/ND-CP)</li> <li>-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회사 투자 시행령(Circular 13 2003)</li> </ul>
투자 유형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형태 외에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향상, 환경오염 방지능력도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BCC, BOT, BTO, BT 정도에 불과했던 투자유형을 다양화</li> </ul>
	간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 회사 지분 취득 (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가 제한되어 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취득,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 기타 재무참여 등 간접투자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음</li> </ul>
	현지 법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현지법인도 새로운 현지법인(자회사)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불허</li> </ul>
투자 절차	투자 허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법과 투자등록 및 심사기관은 동일하나, 기존 법에 비해 심사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등록 및 심사로 구분되며, 심사기관은 수상 및 지역인민위원회, 공업단지관리위원회 등이 있음</li> </ul>

제 4 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투자 등록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미\$ 1,900만)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의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선스 획득	-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
	등록 소요 기간	- 미 1,900만 달러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 이외의 분야 소요기간은 15일 이내에 등록	- 금액명시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
	투자 심사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미\$ 1,900만)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 승인 획득 가능	-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
투자 인센티브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	- 동 법 시행령의 부록에 상세히 규정 - 조건부 투자분야 및 투자금지분야가 기존보다 세분화됨	- 법인세법 시행령 164 준용
	세금 우대 조항	-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음.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종래의 법인세법 시행령(Decree) 164 부칙의 투자우대세율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	- 외국인 투자관련 우대세율은 법인세법 시행령(Decree) 164 준용 - 법인세 우대 세율은(28%, 20%, 15%, 10%)로 구분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 완료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li> <li>- 투자 장려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 없음</li> </ul>
	수입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교통장비, 기타 제품 구입 시 수입관세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li> </ul>
	토지 사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li> <li>- 외국인투자법 의정서에 의하여 50년(최대 70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li> </ul>
	토지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시 토지 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 형태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T, BTO, BO 형태 투자 또는 열악 지역 투자 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li> </ul>
	기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공예단지 등 투자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단지, 가공단지 투자 시 우대 가능만 명시</li> <li>- 첨단기술단지는 별도로 규정</li> </ul>

제 4 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투자자 권리	원자재, 장비 구매	-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의무조항 해제)	-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
	투자금 회수	- 투자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	-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 매각 권한만 있다고 명시
	수출 기업 등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수시장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언급 없음
투자 보장	투자 자산 유상 보상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 - 보상 수단은 환전가능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명시 없음 - 보상 수단에 대한 언급 없음
투자 분야 및 이종 가격	무역 및 유통업 분야 투자	- 외국투자자가 무역 및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100% 단독투자가능 - 취급 업종분야 및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음 - 동 분야는 자동 승인 대상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 대상 분야로 향후 세부 지침 보완 예상	- 무역,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수상승인 조건이라 사실상 불허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투자만 허용 -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품목 확대 불가능

구 분		신투자법	구 법
	이중 가격 적용	- 외국투자자도 내국기업과 같은 가격의 전력, 수도 등을 적용한다는 이중가격폐지 언급	- 외국 투자기업에게는 베트남 국내 기업보다 높은 전력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가격 적용
투자 청산	청 산 시 조건	-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의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	-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 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

자료 : 이상근, “베트남 일반현황, 한국투자현황 및 통합투자법 소개 -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 KICPA Monthly Journal, 2007. 2, 66-68면을 수정 보완함.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개방적 경제운용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치, 국영기업의 회사제도화 등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도이모이(Đổi Mới)’ 정책의 시행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헌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을 정하고 정부조직과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의해 개인의 경영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형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다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 및 출자하는 기업형태가 출현하였거나 대외경제 개방으로 합작기업도 다수 설립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소유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는 곧 기업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입법자는 계약 및 재산법과 함께 기업법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적 하부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베트남 국회는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1988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경제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 1990년 베트남



남 최초의 현대 기업법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시장경제에서의 회사 개념과 같은 회사가 베트남 법제상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사법의 입법은 당시 베트남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었으며, 당시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신속한 법적 대응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이 법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영역에 속하는 기업의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이다.<sup>58)</sup>

## 제 2 절 투자법제

### I. 체 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시행된 신투자법은 1987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 활동 전반에 관한 법이며 기업법, 상법 및 기타 법령들과 함께 사업 활동과 투자활동을 규율한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Decree no. 108/2006/ND-CP 와 Decision no. 1088/2006/QD-BKH와 같은 규정들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의 절차, 제출서류,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율한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법에 의한 규율도 받게 되는데, 예컨대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기업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이다.<sup>59)</sup>

---

58) 그러나 입법자는 개인·조직에 대한 경영자유권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회사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행정기관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실제 회사 설립에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사법기관, 공안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들 기관의 권한이 상호 중복·모순되었다. 정작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회사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베트남 기업법의 연혁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 「ASEAN 투자법령해설집」, 2012. 참조.

59) 법무부,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2010, 8면.

종전 외국투자법에는 투자형태에 대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사업협력계약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건설-운영-양도계약 : Build-Operation-Transfer), BT(건설-양도계약 : Build-Transfer)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종전 외국투자법보다 다양한 투자형태가 규정되었다.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형태로 그 밖에도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M&A)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 다양하게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 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한 투자 등 간접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법에서 세금, 회계, 토지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투자증명서에 투자우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자본충자,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 설비, 자재, 차량 및 그 밖의 제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규정, 위 투자우대분야에 대한 투자 시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중요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판매,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자본 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의 회사설립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업법은 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한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개인 기업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

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sup>60)</sup>

현재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률의 기본법인 베트남 투자법은 총 10 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2 - 베트남 신투자법의 체계>

제 1 장	일반규정
제 2 장	투자보장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 4 장	투자형태
제 5 장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제 6 장	직접투자활동
제 7 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용
제 8 장	해외투자
제 9 장	국가의 투자관리
제10장	시행규정(부칙)

## II. 주요 내용

### 1. 총 칙

총칙은 투자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및 투자법에서 사용되는 각종 단어의 정의와 베트남의 투자정책 및 투자활동에 대한 적용법령, 즉 法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베트남 투자법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장, 투자 우대 및 장려 분야,

---

60) 전병서, 앞의 글, 3-6면.

베트남 내 투자 및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침을 정하는 법으로서(제1조), 본 법의 적용 대상은 ① 베트남 영토 및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내국 및 외국투자자 및 ② 투자활동과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이다(제2조).

그리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투자자, 외국투자자, 외자계 기업, 투자활동, 투자프로젝트, 투자자본, 국가자본, 투자주, 외국투자, 국내투자, 해외투자, 조건부투자분야, 경영협력계약(BCC), 건설-경영-양도계약(BOT), 건설-양도-경영계약(BTO), 건설-양도계약(BT),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23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베트남의 투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다(제4조).

- ① 투자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 직종에 투자 할 수 있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투자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② 국가는 경제구성원 내 모든 투자자들 및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평등한 법적 대우를 한다. 또한, 국가는 투자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조건을 조성한다.
- ③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수입, 기타 합법적인 각종 권리 및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각종 투자활동들의 존재 및 장기적 발전을 인정한다.
- ④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투자관련 국제 조약들의 이행을 보증한다.
- ⑤ 국가는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들에 대한 투자에는 장려 및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한편,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근거법으로 투자법, 국제 조약, 외국 법률, 국제투자 관습 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 2. 투자보장

본 장은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의 영리활동에 따른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송금의 권리,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분쟁해결책 선택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합법적인 투자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 되지 않으며, 행정 조치로 압류 되지 않으며, 특히 외국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국익, 안보, 국방상의 이유로 인한 재산징수 및 징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지불 혹은 보상이 이루어지며, 투자자는 이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투자자의 자본과 재산에 대한 보장 원칙을 두고 있다(제6조).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보호(제7조), 시장개방 및 무역에 관련된 투자(제8조), 자본과 자산의 해외송금(제9조), 경비, 수수료 및 요금의 동일적용(제1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법률 및 정책변화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권익과 혜택이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익과 혜택보다 더 우호적인 경우, 새로운 법률, 정책이 효력을 가질 때로부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 정책의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즉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하나 혹은 일부, 또는 일정한 조치(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 향유,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제11조), 베트남 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인되고 있다(제12조).

### 3.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본 장은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한다. 즉, 투자자의 권리로서 투자·경영의 자주결정권(제13조), 투자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제14조), 투자활동과 관련한 수출입, 마케팅 및 광고, 가공 및 재가공 권리(제15조), 외국환매입권(제16조), 자본 또는 투자프로젝트 양도 또는 조정권(제17조), 토지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재산의 담보(제18조) 등을 규정한다.

반면에 투자자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제19조).

- ① 투자 수속 관련 법 규정 준수,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내용 및 투자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등록 내용의 성실성, 정확성 및 각종 인증서류들의 대한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법이 규정하는 재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 ③ 경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 규정의 준수
- ④ 법에 규정된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의 인품과 명예 존중,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 ⑤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 ⑥ 환경보호 관련법의 규정 준수
- ⑦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 4. 투자형식

투자는 실제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실제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칭하는 “직접투자” 또는 상장된 주식이나 각종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경영 활동에는 참여

하지 않으면서 투자이익을 얻는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은 투자자가 얼마나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지만, 사실 신투자법에는 경영에의 직접참여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sup>61)</sup>

직접투자는 ① 국내 혹은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② 국내 및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③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④ 경영개발투자, ⑤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⑥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⑦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제21조).

위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투자형식에 근거하여 경제조직의 설립투자(제22조), 계약에 따른 투자(제23조), 경영개발투자(제24조), 자본 출자, 지분매입 및 합병매수(제2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간접투자는 ①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② 증권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③ 그 밖의 간접금융제도를 통한 투자의 형식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6조).

베트남 투자법에서 직접투자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국내 혹은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출자에 의한 경제단체의 설립이다. 이는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의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sup>62)</sup>

61) 한국농어촌공사, 베트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89면.

62) 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단체 설립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자는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절차와 경제단체 설립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길 요청하였을 경우, 동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서를 발급한다(제6조). 동 시행령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기업법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ㄱ) 100% 외국인 1인 유한회사
- ㄴ) 100% 외국인 2인 이상 유한회사 (외국인 투자자 2인 이상)
- ㄷ) 100% 외국인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자 3인 이상)
- ㄹ) 외국인 1인과 베트남인 1인 간의 합작에 의한 2인 이상 유한회사
- ㅁ) 외국인 1인 이상과 베트남인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합작에 의한 주식회사

투자형식에서 계약에 따른 투자로는 BCC, BOT, BTO, BT계약에 의한 투자가 있다. 참고로 베트남의 2011년도에 실행된 외국인투자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 2011년에 발생한 외국인 투자형식>

투자형식	신규 (건 수)	신규투자 (금액)	증자 (건 수)	증자 (금액)	신규증자 (금액)
100% 단독투자	899	65억 달러	331	21억 달러	87억 달러
BOT, BT, BTO 등	1	22억 달러			22억 달러
합작투자 (JVC)	186	27억 달러	33	5억 달러	32억 달러
경영협력계약 (BCC)	3	6천 7백만	1	3억 8천만	4억 5천만
주식회사	2	7백만 달러	9	2천 6백만	3천 3백만
합계	1,091	115억 달러	374	31억 달러	146억 달러

자료 :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 (1) 경영협력계약(BCC)

BCC 즉, 경영협력계약은 조합의 형태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과 베트남인간에 서면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즉 투자활동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쌍방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 당사자 간에 계약적 관계만을 창출하지만, 무역거래와 같은 순수한 경제



적 쌍방무역계약은 경영협력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영협력계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계획투자부로부터 당사자의 협력계약내용, 법적 및 재정상태, 그리고 관계의 경제적 근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획투자부의 허가과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협력계약서, 사업협력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 당사자의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경영협력계약은 별도의 법인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계약으로 인한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양측의 책임과 의무, 또는 생산물 분배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다. 베트남 측 파트너는 현지 조세법, 외국인 측은 외국인투자 관계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세제상 그리고 금융상의 의무는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지만, 베트남 당사자는 베트남 국내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전의 탐사, 조사, 개발을 위한 BCC 계약 및 일부 자연자원에 대한 생산물 분배 형식의 계약은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 (2) 건설-경영-양도계약(BOT)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수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중 BOT 즉, 건설-경영-양도계약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베트남의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이다. 건설경영양도계

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이다.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건설, 리조트 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이다.

건설-경영-양도계약 방식에 의한 진출절차는 ① 정부의 사전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② 낙찰 후 정부가 정한 BOT 실시기관과 계약 체결 및 베트남 내 법인 설립, ③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서이다. 베트남 정부는 BOT 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BOT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이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건설, 운영목적으로 기기, 장비, 부품,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며 보조계약자에 대해서도 성격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어온 매출세는 각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국무수상의 결정에 의해 협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과실송금세는 가장 낮은 5%가 적용된다.

### (3) 건설-양도-경영계약(BTO)

BTO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과 투자자가 일정한 기간 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건설공사가 완료한 뒤에는 투자자는 베트남에 해당 인프라시설을 이전하고, 한편 투자한 자본의 회수 및 합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그 인프라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권리를 받는다.

### (4) 건설-양도계약(BT)

BT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과 투자자가 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건설공사가 완성한 뒤에는 투자자가 베

트남에 해당 인프라시설을 이전하는 한편 투자한 자본의 회수 및 합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그 밖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한다.

## 5.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본 장은 투자우대 분야, 우대지역, 조건부 투자분야 및 투자금지분야에 대하여 정한다.

베트남의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가능 분야라 하더라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63)</sup>

### (1) 투자분야 및 지역

#### 1) 투자우대분야

신투자법 제27조는 투자우대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새로운 자재,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제조 분야
- ②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 ③ 첨단 기술 및 현대적 기술의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양성 분야
- ④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 ⑤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

63) 한국농어촌공사, 앞의 보고서, 90면.

- ⑥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 ⑦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 ⑧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를 정하고 있다.

한편, 위의 투자우대분야는 다시 특별우대분야와 일반우대분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법 시행령(Decree 108/2006/ND-CP)에서 규정한다.<sup>64)</sup>

## 2) 투자우대지역

투자우대지역은 ①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과, ②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를 말한다(제28조).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또는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투자법 시행령 부록 II에 각 쯤마다 구체적 지명이 정해져 있다.

64) 특별투자우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상세분야는 생략).

- A. 신소재, 신에너지, 하이테크 제품 생산,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기계공학기술
- B. 농업, 임업, 수산업, 염업, 인조종자생산, 신 종자 및 가축
- C. 하이테크, 현대기술, 생태계 환경 보호, 하이테크 이용 연구 개발
- D. 노동집약적 프로젝트
- E. 교육, 훈련, 의료,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F. 기타 생산, 서비스 분야

한편, 일반우대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 신소재생산, 신에너지 생산, 하이테크 제품 생산,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기계공학 기술
- **석유개발, 광산개발, 에너지, 시멘트 분야 설비 장비 생산, 대형 상하역 설비 생산, 금속가공 공구 생산, 철강 설비**
- B. 농업, 임업, 수산업, 염업, 인조종자생산, 신 종자 및 가축
- C. 하이테크, 현대기술, 생태계 환경 보호, 하이테크 이용 연구 개발
- D. 노동집약적 프로젝트
- E. 기반시설 구축 및 건설
- F.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문화 개발
- G. 전통업종 개발
- H. 기타 서비스 분야

### 3) 조건부 투자 분야

내국, 외국투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제29조).

- ①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안전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② 금융 및 은행 분야
- ③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④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⑤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⑥ 부동산 사업
- ⑦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⑧ 교육훈련사업 개발 분야
- ⑨ 그밖에 법률에 정하는 분야

이외에도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에서 확약한 이행 예정 조항에 속한 투자 분야들이 외국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추가로 포함된다.

외국투자 자본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은 분야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활동 과정 중에 기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 분야의 목록에 새로이 보충 포함되었다.

투자자는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4) 투자금지분야

신투자법 제30조는 투자금지분야를 정하고 있다.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②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③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④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등

## (2) 투자우대

### 1) 투자우대 대상 및 조건

신투자법 제27조와 제28조에 규정된 투자우대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능력 및 효율의 향상, 기술 혁신, 상품의 질 향상, 환경오염의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도 적용 된다(제32조).

### 2) 세금우대

신투자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33조).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 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는다.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우대대상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 우대대상 및 근거법령>

우대대상	주요 내용	근거법령
법인소득세	- 법인세 우대 - 세율, 우대기간, 면제기간, 감면 등	- 투자법 시행령 - 법인세법시행령
수출입관세	- 세금감면 -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 투자법 시행령 - 수출입법
토지사용료	-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사용세 감면 - 토지임차료 감면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감면 등	- 투자법 시행령 - 토지법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앞의 보고서, 97면.

### 3) 손실의 이월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4조).

### 4)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따른 감가상각률 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제35조).

## 5)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시한이 요구되는 경우 70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다.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투자자가 토지법의 규정을 준수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관은 승인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기간에 대해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우대분야 혹은 투자우대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받을 수 있다(제36조).

## 6)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정부는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상황 및 본 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규정한다(제37조).

우대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분야 혹은 특정 지역, 경제특구의 개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본 법에 규정된 투자우대와 다른 투자우대에 관하여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제39조).

## (3) 투자지원

국가는 투자에 대하여 기술이전(제40조), 인재양성(제41조), 투자서비스 장려(제42조)에 관하여 지원한다.



## 6. 직접투자활동

본 장은 실질적으로 투자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을 위한 투자허가서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투자허가의 신청이 추후 설명하는 기업법상의 법인설립과 결국 동일한 의미라는 점이다. 즉, 베트남에서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은 곧 투자허가서 신청을 의미하고 투자허가서 신청은 곧 법인설립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 장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현은 결국 투자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이 된다.<sup>65)</sup>

### (1) 투자절차

#### 1) 국내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절차

투자자본 규모 150억 동 이상 3000억 동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투자자본 규모 150억 동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제45조).

#### 2) 투자등록 내용의 구성

투자등록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투자자의 법적 자격,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투자 자본, 프로젝트 시행계획, 토지 사용

---

65) KOTRA, 앞의 책, 70면. 적용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법 시행령은 직접투자에만 적용되며 직접투자 중에서도 법인의 설립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지분이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이익만을 꾀하는 간접투자나 직접투자의 한 형식이기는 하나 정부와의 계약에 근거한 직접투자인 BOT, BTO, BT 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면적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협약, 투자 우대건의 사항(만일 해당 사항이 있다면) 등을 들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이하,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제46조).

이 때 등록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 및 내용과 함께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합자 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기업 정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투자등록이 이루어지면,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갖춘 투자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 3) 투자프로젝트 심사

국내의 투자프로젝트 혹은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이상,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투자 심사는 충분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초과 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시간이 다소 늘어 날 수는 있으나,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47조).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프로젝트의 목적, 투자 지점, 투자 규모, 투자 자본, 투자 이행 계획, 기술 설명서, 환경 설명서로 구성된 경제-기술 설명서, 외국투자자는 합작 계약서, BCC 계약서, 기업정관이 있으며, 기술 기반시설 개발계획, 토지사

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기타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토지 사용의 면적, 프로젝트 이행 계획,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에 대하여 심사한다(제48조).

#### 4)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의 심사절차

①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이하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절차의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설명서, ②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 법 제45조 3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③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 법 제46조 2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반면,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의 경우에는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이 법의 제48조 1항에 규정된 심사 서류,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 및 이 법의 제48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제49조).

#### 5) 경제단체 설립 관련 투자 절차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 심사를 받거나,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되어 이미 설립된 경제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 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 실행 절차를 진행하되 반드시 새로운 경제단체를 설립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경제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국내투자자는 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며, 이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절차를 진행한다(제50조).

## 6)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시한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하고 조정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등록한다. 그러나 투자심사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별로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정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조정 사유, 기 심사내용과 조정 신청 내용상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조정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조정,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제51조).

## 7)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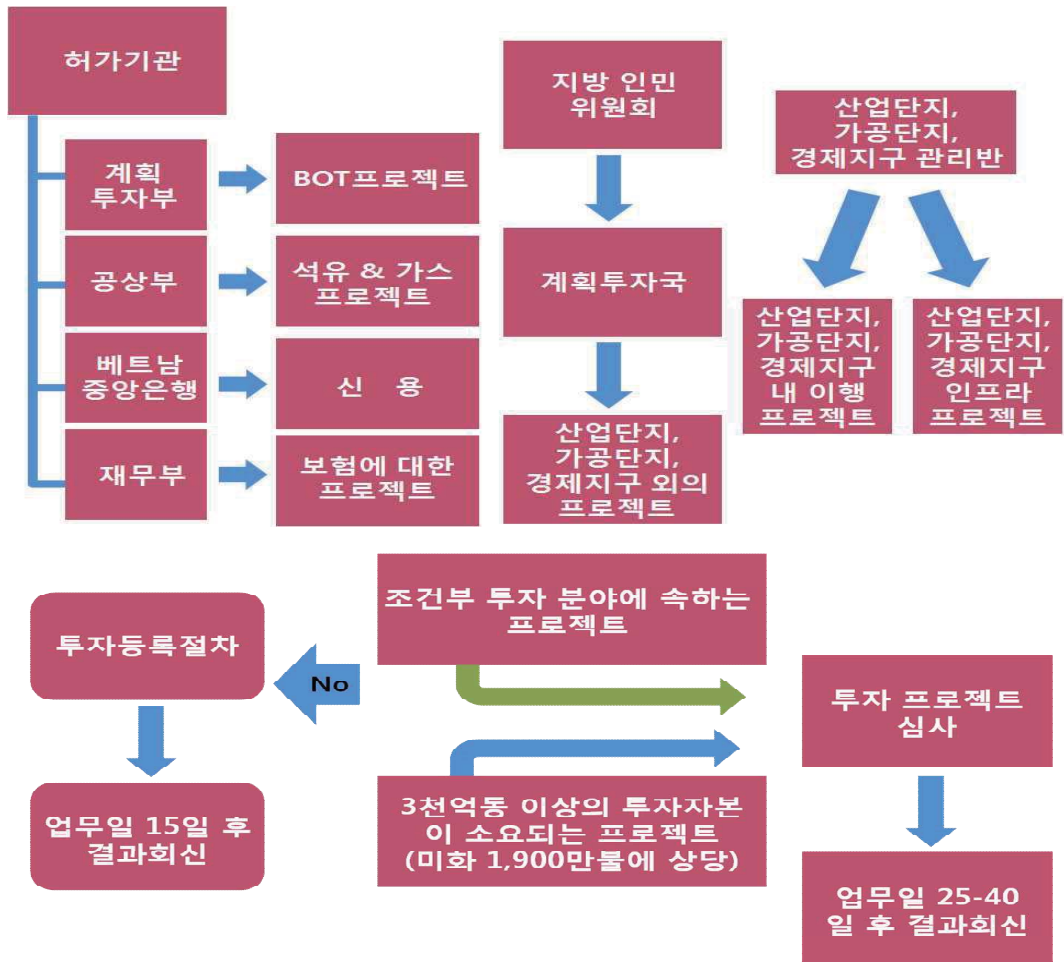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은 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부합하되,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활동시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증명서 상에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을 명시한다(제52조).

## 8) 프로젝트 수립, 투자 결정, 투자 심사에 대한 책임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하며, 투자등록 내용 및 투자 관련 서류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된 투자관련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립, 투자 결정, 검토, 투자 증명 관련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제안과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투자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 투자절차도 개관>



자료 : MPI, 베트남 투자환경, 2010. 6. 18, <http://www.aseankorea.org>

## (2)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 1)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의 임대와 교부

토지 사용의 요구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 관리 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의 교부, 임대관련 절차와 절차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한다(제55조).

## 2) 건설 부지의 준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력으로 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관할권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지를 교부하기 전에 부지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가 가능하고, 개인 또는 세대 또는 경제단체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제56조).

## 3)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자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제57조).

4)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예산, 총예산에 대한 수립, 심사 및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투자자는 환경보호 및 건조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58조).

5) 기계, 설비의 감정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고정자산으로 납입되는 수입기계, 설비의 가치 및 품질을 감정할 책임을 진다(제59조).

6) 베트남 시장에서 상품의 소비(판매)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 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베트남 내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의 상품을 소비(판매)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 판매가격은 국가관계기관이 공포하는 가격 체계에 따른다(제60조).

7) 외환 및 베트남 동(VND) 계좌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은행에서 외환계좌 및 베트남 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이 승인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국내 은행 및 외국의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베트남 국가 은행의 규정을 따른다(제61조).

8) 보 험

투자자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보험 사업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 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62조).

9)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투자증명서가 발급 된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한다(제64조).

10) 투자프로젝트의 종료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제65조).

- ① 투자증명서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② 계약서, 기업정관 또는 투자이행계획에 관한 투자자 간 합의서에 규정된 종료 조건에 따르는 경우
- ③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
- ④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

11)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와 건조물에 대한 국가의 보증

베트남 투자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투자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차입자본, 원자재의 공급, 상품의 소비(판매), 납입,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을 담당할 관할 국가기관을 지정한다(제66조).

7. 기 타

신투자법은 제7장 이하에서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관리, 해외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특별하게 주의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 제 3 절 기업법

### I. 체 계

베트남 투자법에 의하여 투자자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투자허가서가 바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기업법은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종류와 그 운영방식을 정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2005년에 개정된 현행 베트남 기업법은 기존에 기업을 규율하고 있던 1999년 기업법, 2003년 국영기업법 및 외국인투자법 중 외국인기업 관련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다.

베트남 기업법은 베트남이 시장경제법질서를 유지하고 현대적 기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베트남 기업법은 시장경제원리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유기업을 회사제도로 전환하고,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선진 입법에서의 국제공통의 법 개념을 수용함은 물론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국제통일법적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기업법은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먼저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중국의 기업법을 상당부분 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67)</sup>

베트남 기업법은 총 10장 17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

66) 이준표, “베트남 기업법에 관한 연구 - 회사설립규정을 중심으로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71면.

67) 이준표, 앞의 글, 71-72면.

&lt;표 15 - 베트남 기업법의 체계&gt;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설립과 사업자 등록
제 3 장 유한회사
제 4 장 주식회사
제 5 장 합명, 합자회사
제 6 장 개인기업
제 7 장 기업집단
제 8 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제 9 장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제 10 장 부 칙

## II. 주요 내용

### 1. 기업의 형태

#### (1) 개 요

베트남 기업법은 기업에 관하여 “경영활동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칭, 재산, 일정한 주소, 설립등기를 갖춘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 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조합기업 및 개인기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베트남 법에서는 법인의 종류로 개인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sup>68)</sup>(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68) 유한회사의 경우도 외국인 1인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1인 유한회사와 2인 이상의 투자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2인 이상의 유한회사가 있다. 근본적으로 두 회사 형태의 차이점은 1인 유한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의 주인이 1인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그 1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굳이 법에서 운영조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없는 법인 형태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데 개인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형태에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두 가지 모두 다수의 당사자들이 합자계약서에 기하여 설립한 합작회사라는 점과 투자자가 회사의 여러 가지 채권 및 채무와 관련하여 투자금 내에서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유한회사는 역사상으로 투자자의 인적관계를 중요시하는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을 표상하는 주권에 의하여 회사의 지배력이 표상되는 물적 회사의 색채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상기 이유로 인하여 유한회사는 폐쇄성이 강한 반면 주식회사는 개방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기인한 베트남 기업법상 두 개의 회사 간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 2인 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원 / 주주	- 2인 이상 50인 미만	- 3인 이상 제한 없음
지분양도	- 사원에 우선 양도 제안. 30일 후 인수 안 될 경우, 타인양도 가능	- 양도 자유 - 단, 발기인이 소유한 주식은 3년간 다른 발기인에게만 양도 가능
자본공여	- 스케줄에 따라 납입	- 설립 시 보통주의 20% 이상 인수해야 하며 투자허가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주금 납입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 나머지 주식 3년 이내 인수하고 납입
이익배분조건	(1) 흑자 (2) 세금완납, (3) 배분 후, 채무이행가능	(1) 흑자 (2) 세금완납, (3) 배분 후, 채무이행가능
지분환매요구권	- 사원총회의 주요결정에 반대 시, 지분환매요구가능	- 주주총회의 주요결정에 반대 시, 지분환매요구가능
증감자 결정	- 사원총회결의	- 경영위원회 + 주총결의
주식 발행/종류	- 없음	- 보통주 - 우선주
경영구조	- 사원총회 - 총회 의장 - 대표이사	-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 경영위원회 의장 - 대표이사
정족(의사/의결)	<사원총회> - 의사정족: 첫 총회소집 시 전체지분의 75% 이상 출석, 첫 총회 소집이 실패하고 두 번째 총회 소집 시 51%, 세 번째 총회 소집 시, 출석 지분 상관없이 총회성립 - 의결정족: 주요의결사항 경우, 출석 지분의 75%, 보통의결사항 경우, 출석지분의 65%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주주총회> - 의사정족 : 첫 총회소집 시, 전체 지분의 65%, 두 번째 소집 시, 51%, 세 번째 소집 시, 상관없음 - 의결정족 : 주요의결사항 경우, 출석 지분의 75%, 보통의결사항 경우, 출석지분의 65%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전체지분의 75%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전체지분의 75%	<경영위원회> - 의사정족: 총 위원 3/4 참석 - 의결정족: 출석위원 과반수

자료 : KOTRA, 「투자실무가이드 베트남 편」, 2009, 68면 이하.

## (2) 기업의 유형

2005년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개인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 1)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다시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회사와 1인 유한회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인 2인 이상의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고 회사의 사원들은 자신이 기업에 출자한 지분만큼 책임을 진다(제38조). 1인 유한회사는 독립된 법적 존재이고, 하나의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사원들은 유한책임을 지며 일반에 공개하는 주식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제63조).

### 2)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자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으로 분할되며, 적어도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 수의 제한은 없으며, 주주의 책임은 납입된 자본금 범위 내이고, 자본 조달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77조).

### 3) 합명합자회사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소유하며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소 2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납입한 자본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조직 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명합자회사는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제130조).

### 4)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기업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개인이 소유한 기업을 말한다. 개인기업은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은 1개의 개인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다(제141조).

### 5) 기업집단

베트남 기업법상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이익, 기술, 시장 및 사업서비스에 의하여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회사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제적 복합기업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제146조).

## 2. 회사의 설립

### (1) 설립 주체

베트남에서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주체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발기인 수와 관련하여 유한회사는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사원이 요구되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이면 상한은 없다. 경우에 따라 1인 유한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또는 외국의 단체와 개

인은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sup>69)</sup> 설립 및 경영권은 제한된다(제13조 제1항).

베트남 기업법상 발기인은 설립등기신청 전에 기업설립과 활동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기업에 귀속된다. 기업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발기인은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14조).

## (2) 설립 절차

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이 상호선정, 정관작성, 출자이행, 설립 등기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 1) 상호 선정

상호는 베트남이어야 하고, 숫자 및 상징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유형과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는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기업의 모든 거래문서, 서류 또는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상호선정에서 기존 기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사용은 금지된다.

### 2) 정관 작성

베트남 기업법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2조). 우선, 회사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재사항이다.

- ① 상호,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의 주소
- ② 사업목적 및 사업 분야
- ③ 정관자본금과 자본의 증감방법

---

69) 여기서 ‘일정한 경우’라 함은 국가의 자산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및 베트남인민 무력부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간부나 공무원, 베트남인민군 산하 각 기관소속사관, 부사관, 직업군인, 국방공민 및 산하 부대, 미성년자, 행위능력 없는 자 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구금형벌집행 중인 자, 법원에 의한 경영행위 금지자 기타 파산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13조 제2항).

한편,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④ 조합기업의 경우, 무한책임조합원의 성명·주소·국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소·국적 및 사원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주식회사의 경우, 성명·주소·국적 및 발기인 개인의 기타 기본적인 인적사항
- ⑤ 유한회사와 조합기업의 경우, 사원의 출자지분과 출자가액,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보유 주식 수·주식의 종류·액면가액·발행주식총수
- ⑥ 유한회사·조합기업의 경우, 사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와 의무
- ⑦ 회사의 지배구조
- ⑧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상 대표자
- ⑨ 회사의 의결 방식, 내부 분쟁에서의 해결원칙
- ⑩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사원·사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사장 및 감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근거 및 계산방법

그 밖의 정관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⑪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에서 사원 또는 주주가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⑫ 이익배당 및 손실분담에 관한 원칙
- ⑬ 회사의 해산 및 청산
- ⑭ 정관의 개정 및 보충
- ⑮ 합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및 서명, 유한회사의 경우, 법률상 대표자·소유주·사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상 대표자·발기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기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주주 또는 사원 간의 합의 내용



### 3) 출자 이행

베트남에서 단체와 개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한회사 및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그러나 국가기관 및 베트남인민무력부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자산을 사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가 제한된다(제13조 제4항).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원이 출자하기로 한 자산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登記하여야 한다. 기업의 대표는 출자를 약속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登記 담당 공무원에게 출자의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출자가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또는 허위의 보고로 인하여 기업 또는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진다. 사원이 약속한 자산의 전부를 즉시 출자하지 못한 경우, 출자의 부족분은 회사에 대한 채무로 본다. 당해 사원은 적절하게 출자하지 못한 사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진다(제39조).

주식회사의 발기주주는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며, 설립登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발기주주가 인수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잔여주식은 타 발기주주들이 보유주식비율로 납입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의 발기주주가 납입하거나 발기주주 아닌 타인이 납입할 수 있다. 만일 발기주주의 인수주금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모든 발기주주가 연대하여 주금납입의 책임을 부담한다(제84조).

조합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를 약속한 자산 전부를 즉시 출자하여야 한다. 무한책임조합원이 약정한 출자 전부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이 약정한 출자 전부를 즉시 출자하지 않은 경우, 출자의 결손은 회사에 대한 채무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사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제131조).

#### 4) 설립 등기

베트남 기업법상 기업은 설립등기증명서 발급일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설립등기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증명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불허사유와 서류의 개정 또는 보충의 필요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설립등기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하려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제16조~제19조).

베트남 기업법은 설립등기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제24조). 즉, 첫째, 신청한 사업활동이 금지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상호가 베트남 기업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부합하여야 한다.<sup>70)</sup> 셋째, 본사소재지가 제35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넷째, 법률에서 정하

70) 상호등록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일정한 기준 하에서 기업의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불허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제31조). 기업의 명칭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기관이나 인민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정치단체, 사회단체, 정치전문가 단체, 사회전문가단체, 사회전문가단체의 명칭을 해당 단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베트남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이나 도덕 및 관습에 어긋나는 단어 또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제32조). 기업의 외국어 명칭은 베트남어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외국어 명칭을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 거래서류 또는 출판물에 공시할 때에는 베트남어 명칭보다 작은 크기로 하여야 한다. 기업 명칭의 약어는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 명칭에서 축약할 수 있다(제33조).

는 설립등기 필요 서류가 유효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등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은 등기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소의 웹사이트 또는 일간지 또는 전자신문에 3회 연속으로 해당 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조).

### 3. 회사의 지배구조

베트남 기업법은 서구의 기업지배 규범을 계수하여 이사의 의무, 고지, 소수주주의 권한,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법상 2인 이상의 유한회사의 기관은 출자자에 의해 구성되는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로 구성되고, 11인 이상의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도 조직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회로 구성된다.

#### (1) 주주총회

##### 1) 의의 및 권한

베트남 기업법상 주주총회(사원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① 회사의 발전전략을 승인하며, ② 수권주식의 종류 및 각 종류별 주식 총수를 결정한다. 또한 ③ 이사회 및 감사회 구성원을 선임 및 해임할 권한을 가지며, ④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자산 총액의 50% 이상(정관에서 다른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당하는 자산의 투자 또는 매각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제96조).

이 밖에도 주주총회(사원총회)는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⑤ 추가 수권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자본의 조정을 제외한 정관의 개정과, ⑥ 연차재무보고서의 승인, ⑦ 각 종류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환매결정, ⑧ 이사회 및 감사회의 위법행위로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사 및 처리방법의 결정, ⑨ 회사의 구조조정 및 해산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2) 소 집

베트남 기업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지만, 주주나 감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회는 주주 내지 감사회의 소집청구가 있으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30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및 감사회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회의 의장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97조).

총회의 소집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를 소집한 자는 참석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주주 명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며, 회의의 의안, 요령 및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각 참석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송부한다.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로 인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제97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정관에서 7일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집통지는 주주의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회사에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 및 관련 자료는 주주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도 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00조).

## 3) 의결권 행사방법

베트남은 개인주주 및 기관주주의 수권대리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기관주주는 법률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수권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수권대리인의 주식 수 및 의결권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권대리인의 해임, 선임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6조).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는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권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권대리인이 없는 기관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회사가 정하는 서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임인이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위임을 철회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101조).

베트남 기업법에 있어서 총회의 결정방식은 표결, 서면의견수집 및 전자적 방법 등 정관이 정한 방식에 의한다. 다만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결방식에 따라 결의하여야 한다(제104조).

## (2) 이사회

베트남 기업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회의체 기관이다.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발전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 결정, 주식종류 및 각 종류주식의 수권주식 수에 관한 제안, 각 종류별 수권주식의 신규 모집 결정, 주식 및 사채의 모집가격 결정, 주식 환매 결정, 투자 프로젝트 결정, 시장 판촉, 마케팅 및 기술 솔루션에 관한 결정, 재무제표 상 총 자산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매매, 차입, 대여 또는 기타 계약 승인 등을 들 수 있다(제108조).

베트남 기업법상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에게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정기이사회와는 별도로 의장은 감사의 요청이나 이사 또는 사장, 그리고 5인 이상의 다른 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의 시 투표, 자문의견서 또는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 1명이 1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에는 법률,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결의로 회사에 손실을 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3) 이 사

베트남 기업법상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보통주 5%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 또는 회사의 사업경영이나 주요 사업활동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처럼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유자본지분이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관계인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제110조).

이사는 법률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와 주주의 적법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정보, 노하우, 사업기회를 활용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직위, 권한 및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제119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가 회사와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자산 총액의 50%이상(정관에서 이보다 적은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당하는 계약 및 거래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이익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그 외의 계약 및 거래는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총 의결권 중 65%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체결된 계약 또는 거래는 무효가 되며, 당해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지고, 그 계약 또는 거래의 이행으로 생긴 모든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20조).

#### (4) 대표이사

베트남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의장은 이사 또는 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프로그램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회안, 요령 및 자료를 준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채택 및 시행·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장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의장 유고시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대행자의 정함이 없이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이사들이 다수결로 임시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제111조).

베트남 기업법상 이사회는 사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정함이 없는 한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이 때,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는 베트남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베트남 내에 30일 이상 부재 시에는 위임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제95조).

### (5) 감사회

베트남 기업법상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감사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감사로 구성된다. 감사의 임기는 5년 이하로 하되 재선임될 수 있다. 감사회는 구성원들 가운데 1인을 감사회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감사회 의장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서 정한다. 감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은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은 회계사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새로운 감사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제121조).

감사회는 이사회, 이사 또는 이사장의 회사운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감사회는 사업 경영 및 운영,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의 합리성, 적합성, 신뢰성 및 성실성을 점검하며, 사업운영, 연간 및 반기 재무보고서 및 이사회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5 이상(구체적 비율은 정관으로 정함)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타문서 또는 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한다. 감사회는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한 쟁점에 관하여 이사회 및 요청한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회의 조사는 이사회의 통상적 운영 및 회사의 정상적 사업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4. 회사의 자금조달

### (1) 신주발행

베트남 기업법상 이사회는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식발행시기, 방식, 가액 등을 결정한다. 발행가액은 발행시기의 시가 내지



가장 최근에 기록된 회계장부의 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제87조 제 1항). 다만,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 최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중개인 내지 보증인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베트남 기업법은 주주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제64조)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제6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권리와 의무 조항 변경 또는 회사 재조직에 관한 결정에 반대하는 의결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에 대한 재매입 요구권을 가진다(제64조). 주식회사는 보통주식의 경우라면 매각한 총 보통주식 30% 미만을 재매입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매각한 기타 종류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재매입할 수 있다(제65조). 매각한 각 종류별 총 주식 10%이상 재매입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다른 경우에 주식 재매입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 내 주주의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개별 주주의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

## (2) 사채발행

사채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은 주식회사가 법률의 규정과 회사정관에 따라 사채, 양도성 사채 및 기타 사채 발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발행할 사채종류, 총 사채가치 및 발행시점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제62조).

전환사채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발행 직전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베트남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5. 회사의 구조조정

베트남 기업법도 기업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분할, 회사의 합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수의 국영기업의 민영기업화를 비롯한 외자유치에 대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적극성 등이 결합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정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2) 회사의 합병

#### 1) 회사의 신설합병

동종 업종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는 모든 자산, 권리, 의무, 이익 등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여 신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합병되는 회사들은 해산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합병계약의 작성, 합병계약의 승인, 사업자 등록 및 공시에 의한다. 만약 베트남경쟁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설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의 30-50%를 점유하게 된다면, 회사의 합법적 대표는 신설합병을 진행하기 전, 경쟁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이 금지된다.

#### 2) 회사의 흡수합병

동일한 업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사는 모든 자산, 권리, 의무, 이익 등을 이전하는 동시에 활동을 종료, 해산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에 합병될 수 있는데, 이를 흡수합병이라고 한다. 절차는 신설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

### 3) 회사의 분할 및 절차

회사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본래의 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그 주주는 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분할 당시 회사의 사원총회, 회사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기업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분할 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한다. 본 결의안에는 분할 당사회사의 상호와 본사주소, 신설회사의 상호, 회사 자산의 분배를 위한 원칙과 절차, 직원 고용계획, 분할 당사회사의 출자지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회사의 해산 및 청산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상의 사실행위로서, 해산결정, 기업자산의 청산, 공고, 기업채무의 변제, 사업자 등록기관에의 기록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 기업법은 제157조부터 제159조에서 기업의 해산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의 해산사유는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즉,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단독사업주, 무한책임사원 전원 또는 사원총회, 회사소유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③ 회사 사원의 수가 연속 6개월간 기업법에서 요구하는 수 이하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경우가 법정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만 해산할 수 있다(제157조).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의 해산은 사원총회 내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는데, 사원총회의 경우 정관자본금의 4분의 3이상을 소유한

사원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성립되며(제52조),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소유하는 참석주주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성립된다(제104조).

그러나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베트남 기업법상 국가의 기업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② 법률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기업을 설립한 경우, ③ 기업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본점에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④ 기업이 연속 2년 이상 사업자등록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보 없이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철회하고 사업자등록 시스템에서 그 명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기업 해산에 따른 효과로서 당해 기업 및 경영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159조). 금지행위에는 자산을 임대 또는 증여하는 행위, 채무이행청구권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무담보채무를 회사 자산담보부 채무로 전환하는 행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해산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 회사 자산에 대한 저당 설정 기타 담보의 설정, 기존 계약의 해지, 기타 자본 동원 등이 있다.

## 제 5 장 결 론

베트남의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은 여러 분야의 기반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시장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채광기술이 아직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물자원이 풍부함에도 광물 광상의 탐사가 미흡하여 개발이 어려운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베트남은 광업 분야에 있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광물 등 원자재 관련 규범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보완, 개정함으로써 외국 및 민간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광업 분야의 발전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자원 관련 분야의 개발과 발전은 베트남의 도시화, 상업화의 촉진과 더불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의 경제 전망도 그리 밝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재 수요의 증가와 각종 기계 플랜트의 현지 프로젝트 진척 등을 통하여 베트남은 동남아 주요 협력대상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로서는 베트남의 개발 잠재력 및 경제성이 가장 유망한 광종들을 대상으로 광물자원 현황 및 부존의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발전에 필수적 요소인 전략 광물 광종 및 비금속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sup>71)</sup>

---

71) 이지윤 외, 앞의 글, 31면 이하 참조.

베트남은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시장경제 도입 20여 년 만에 아세안의 대표적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sup>72)</sup> 우리나라와 수교 20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의 전면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상호보완적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 간 협력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이 다분했다.

그리하여 베트남과 실질적인 자원 개발 등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변화하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인데, 이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양국의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건설 및 자원 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sup>73)</sup>

해외 투자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외국 현지에 자본을 투입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익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로운 영위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일 것이다. 베트남은 고도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자원개발 분야로의 진출이 유망하다. 이는 단지 천연자원만을 조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 30억 시장의 교두보이며, 특히 Post China 투자국으로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과 한류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평가이기도 하다.

다만 복잡한 행정체계, 불확실한 법률,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등으로 진출 및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

---

72) 김동규, 앞의 글, 303면.

73) 안득기, “한국의 對베트남 자원외교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1호, 126-128면.

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광물, 석유가스 등 원자재 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에너지 부문의 대외 진출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외 기업, 현지 기업, 국내 유관기업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74)</sup>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관련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동반한 신중한 투자를 통하여 양국의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교류의 폭이 넓혀지기를 기대한다.

---

74) 손승호, “베트남 에너지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에너지포커스, 제5권 제1호, 2008년 봄호. 112면.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계경문·김종욱·이경희·Nguyen Thi Thanh Xuan, 「베트남의 정부 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동남아연구」, 제19권 제1호, 동남아연구소, 2009. 5.
- 권경덕,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Kotra Executive Brief 11-028, 2011, 12.
- 기획재정부, “韓·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 대외경제국 보도자료, 2012. 2. 14.
- 김동규, “한국-베트남 간 경제현황과 교역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2010. 3.
- 김홍기, “한국의 대 동남아 주요국과의 에너지 외교 : 에너지 안보 차원의 현황과 전망”, 「동서연구」, 제21권 제1호, 2009.
- 노승혁,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0집 제6호, 2008. 12.
- 박번순,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 \_\_\_\_\_, “베트남의 대외불균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11. 2. 22.
- 박영길,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참 고 문 헌

- 법무부,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2010.
- 손승호, “베트남 에너지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에너지 포커스」, 2008 봄호.
- 송정남,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 안득기, “한국의 대 베트남 자원의외교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제1호, 2008.
- 안희완, 「베트남 투자법」, 주한 베트남 대사관, 2006.
- 양은용,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 왕설매 · 정진섭 · 왕정상,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2012. 4.
- 외교통상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 자원 개발의 이해」, 에너지 협력외교 자료집, 2008.
-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9. 5.
- 이상근, “베트남 일반현황, 한국투자현황 및 통합투자법 소개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 KICPA Monthly Journal, 2007. 2.
- 이준표, “베트남의 정책과 법제 및 원자재 관련 투자전망”,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6.
- 이지운 · 허철호 · 서정률, “베트남 광물자원현황”, 「광물과 산업」, Vol. 22, 2009.

- 장상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 전병서,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1.
- 조상수, “베트남의 석유·석탄 등 자원개발 현황과 전망”, 가스안전저널, 2008, 11.
-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Post-CHINA, 베트남 투자 유의사항 10계명」, Global Investment Report, 2008.
- 한국농어촌공사, 「베트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27, 2009.
- 한국법제연구원, 「ASEAN 투자법령해설집」, 2012.
- KOTRA,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트남」, 2008.
- \_\_\_\_\_, 「투자실무가이드 - 베트남」, 2009.
- \_\_\_\_\_, 「Post-Chin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보고서」, 2009.

### <외국문헌>

- Allens Art Robinson, Legal Guide to Investment in Vietnam, 2010.
- CCOP Vietnam, Member Country Report of VIETNAM, 48th CCOP Annual Session, 13-17 November 2011.
- Clifford Chance, Recent changes in the mining regulations of Vietnam, VILAF, April 2012.
- MAYER · BROWN JSM, Vietnam's 2010 Mineral Law, Legal Update Infrastructure Vietnam, 14 March 2011.

참 고 문 헌

OECD, VIET NAM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Assessment,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2009.

YKVN, Overview of Vietnam Oil & Gas Sector, Report no. 1 on Vietnamese Oil & Gas Sector, March 17, 2009.

<웹사이트>

[http://www.mpi.gov.vn/portal/page/portal/mpi\\_en](http://www.mpi.gov.vn/portal/page/portal/mpi_en)

<http://moj.gov.vn/vbpq/en/pages/vbpq.aspx>

<http://english.pvn.vn/>

<http://www.vietnamlaws.com>

[http://mric.jogmec.go.jp/public/report/2011-04/vietnam\\_11.pdf](http://mric.jogmec.go.jp/public/report/2011-04/vietnam_11.pdf)

<http://www.vietnamlaws.com/pdf/LegalGuidetoInvestmentinVietNam.pdf>

<http://www.moit.gov.vn/web/guest/home>

<http://www.globalwindow.org/>